

『嶽麓秦簡』과 中國古代法制史의 諸問題

林炳德*

목 차

- I. 머리말
- II. 『嶽麓秦簡』의 律과 令
 - 1. 『嶽麓秦簡』의 律
 - 2. 『嶽麓秦簡』의 令
- III. 戰國秦~漢初의 罰金刑·贖刑
 - 1. 『里耶秦簡』의 賞罰刑과 贖刑
 - 2. 賞罰刑에서 罰金刑으로의 변화
- IV. 秦漢의 土地制度
 - 1. 토지구유제설·토지사유제설·국유제와 사유제명존설
 - 2. 『二年律令』이후의 論爭
 - 3. 『嶽麓秦簡』의 田宅
- V. 맺음말

[국문 요약]

2010년 『嶽麓書院藏秦簡(壹)』이 출판된 이후 『嶽麓秦簡』을 자료로 한 연구는 이미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과거의 연구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귀중한 출토자료를 우리 시대에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사료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행운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嶽麓書院藏秦簡(壹)』은 대체로 占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관리인 자가 갖춰야할 덕목을 기술한 「爲吏治官及黔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嶽麓書院藏秦簡(貳)』는 算數書, 『嶽麓書院藏秦簡(參)』은 재판관계 문서로 『張家山漢墓竹簡』의 「奏瀨書」와 유사하며 『嶽麓書院藏秦簡(肆)』는 秦의 律令文書에 해당한다.

『嶽麓秦簡』에는 기본적으로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 나오는 律名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律名도 보이고 있다. 또한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 나오는 律名이라 해도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睡虎地秦簡』에서 『嶽麓秦簡』, 『嶽麓秦簡』에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 『二年律令』으로 이어지는 律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주제어] 『악록서원장진간』, 진한울, 율, 영, 벌금형, 속형, 토지국유제, 토지사유제

I. 머리말

1970년대 후반의 『睡虎地秦簡』 공개 이후 1980년대~1990년대의 중국고대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공전절후의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그 후 『睡虎地秦簡』을 중심으로 한 열기가 가라앉을 무렵 2001년에 공개된 『二年律令』은¹⁾ 종전의 秦漢法制史研究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二年律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 秦漢法制史研究를 새롭게 할 방대한 분량의 간독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즉 2010년 『嶽麓書院藏秦簡(壹)』의 출판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 『嶽麓書院藏秦簡(貳)』, 2012년 『里耶秦簡(壹)』, 2013년 『嶽麓書院藏秦簡(參)』 등 해마다 연속해서 출판되었고, 2015년도 12월에는 드디어 秦의 律令文書인 『嶽麓書院藏秦簡(肆)』가 출판되었다.²⁾ 2015년 秦의 律令文書인 『嶽麓書院藏秦簡(肆)』가 출판되기 전에 2011년 『嶽麓書院藏秦簡(貳)』, 2012년 『里耶秦簡(壹)』, 2013년 『嶽麓書院藏秦簡(參)』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진척이 있었고, 秦의 律令文書인 『嶽麓書院藏秦簡(肆)』의 주요 내용도 2015년 12월에 출판에 앞서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었고 이미 이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
- 1)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北京: 文物出版社, 2006), 150~151號簡.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에 대해서는,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北京: 文物出版社, 2001);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北京: 文物出版社, 2006);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張家山二四七號漢墓出土法律文獻釋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필자는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北京: 文物出版社, 2006)를 기준으로 인용하도록 하겠다. 이하 『二年律令』으로 약칭하도록 하겠다.
 - 2)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壹)』(上海辭書出版社, 2010);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貳)』(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參)』(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肆)』(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里耶秦簡(壹)』(北京: 文物出版社, 2012).

2010년 『嶽麓書院藏秦簡(壹)』이 출판된 이후 『嶽麓秦簡』을 자료로 한 연구는 이미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연구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귀중한 출토자료를 우리 시대에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또 오늘날 中國古代法制史 연구자가 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행운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嶽麓書院藏秦簡(壹)』은 대체로 占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관리인 자가 갖춰야할 덕목을 기술한 「爲吏治官及黔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嶽麓書院藏秦簡(貳)』는 算數書, 『嶽麓書院藏秦簡(參)』은 재판관계 문서로 『張家山漢墓竹簡』의 「奏獻書」와 유사하며 『嶽麓書院藏秦簡(肆)』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秦의 律令文書에 해당한다.

Ⅱ. 『嶽麓秦簡』의 律令

1. 『嶽麓秦簡』의 律

『嶽麓秦簡』에는 기본적으로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 나오는 律名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律名도 보이고 있다.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 나오는 律名이라 해도 『睡虎地秦簡』·『二年律令』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睡虎地秦簡』에서 『嶽麓秦簡』, 『嶽麓秦簡』에서 『二年律令』으로 이어지는 律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嶽麓書院藏秦簡(肆)』의 율령이 공개되기 전후부터 주목을 받은 것이 「行書律」·「亡律」·「尉卒律」이었다. 「行書律」에 대하여는 2015년 『嶽麓書院藏秦簡(肆)』이 출판되기 이전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9년에 陳松長씨가 이를 소개하였다.³⁾ 「行書律」의 간은 모두 11매로 11매인데, 9조의 율령인데, 9조 11매는

3) 陳松長, 「岳麓書院藏秦簡中的行書律初論」, 『中國史研究』 2009-3.

『行書律』을 先頭簡으로 한 5조 7매, 『卒令』의 형식으로 나온 秦令 3조 4매간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睡虎地秦簡』은 『行書律』이 2조 3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陳松長씨가 이를 소개하자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다.⁵⁾ 예를 들어, 『嶽麓秦簡』의 『行書律』에는 『睡虎地秦簡』에서 볼 수 없는 ‘不輒行’이 나오고 있는데, ‘命書’는 보이지 않는다. ‘命書’가 없는 것은 『嶽麓秦簡』이 秦統一以後의 법전임을 반증한다.⁶⁾ 또한 『睡虎地秦簡』에는 문서전달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경우로 ‘隸臣妾 및 不可誠仁者’로 되어 있는데, 『嶽麓秦簡』의 경우에는 ‘女子’, ‘未盈十四歲의 小童’으로 되어 있다.⁷⁾ 한편, 『二年律令』에는 ‘以郵行’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직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하고, 중간에 문서를 열어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以次傳’의 경우에는 문서전달에 기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달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嶽麓秦簡』의 경우에는 郵人의 경우, ‘制書’와 ‘急書’와 같은 특수한 것을 傳職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郵人은 郵吏로 일종의 공직으로 되어 있고, 郵人이 過所를 넘을 때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술이 보인다.⁸⁾ 『嶽麓秦簡』 『行書律』의 내용은 『二年律令』 『行書律』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行書律』의 내용뿐만 아니라 秦·漢 법률의 계승관계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⁹⁾

秦漢以來 편호제민에 대한 통제와 착취는 국가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농민이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은 범죄였다. 秦代의 인구통제는 매우 엄격하여 검수가 出境 시에는 모두 官府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다른 군 현인이 內史郡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고, 내사군 또한 외래인을 머물게

4) 陳松長, 위의 글, 31면.

5) 陳偉, 『嶽麓書院秦簡行書律令校讀』, 簡帛網 2009-11-24; 魯家亮, 『讀麓書院秦簡行書律令簡記』, 簡帛網 2009-11-24; 周海鋒, 『嶽麓書院藏秦簡(肆)의 내용과價值』, 『文物』 712(2015년 9期); 金慶浩, 『秦·漢初 行書律의 내용과 地方統治』, 『史叢』 73(2011), 126면; 李成珪, 『秦漢 帝國의 計時 行政』, 『歷史學報』 222, 2014; 吳峻錫, 『漢代문서전달 노선과 郵傳기구의 설치』, 『中國史研究』 88(2014); 吳峻錫, 『秦代 地方統治와 文書傳達體系』, 『中國史研究』 95(2015).

6) 陳松長, 앞의 글, 32면.

7) 陳松長, 위의 글, 33면.

8) 陳松長, 위의 글, 37면.

9) 金慶浩, 『秦·漢初 行書律의 내용과 地方統治』, 『史叢』 73(2011), 120면.

할 수 없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당사자만이 아니라 伍人도 함께 징계를 받아야 했다. 거주지를 이탈한 농민을 체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 「亡律」인데, 『睡虎地秦簡』에는 「亡律」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睡虎地秦簡』의 「法律答問」과 「封珍式」중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二年律令』에 「亡律」이 나오므로 『二年律令』의 「亡律」과 『睡虎地秦簡』의 내용을 비교하여 秦의 「亡律」을 고찰할 수 있었다. 1993년에 公刊된 장가산한간의 『奏讞書』에는 16개의 안례 중에 도망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嶽麓書院藏秦簡(肆)』의 율령 가운데서 「亡律」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83枚의 律 가운데 105매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것은 도망에 대한 엄금에도 불구하고 秦末에 이르러 사회 혼란의 증가와 도망의 증가라는 실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망의 주체는 黔首만이 아니라 노비와 형도 등이 포함되며 도망인을 은닉하거나 고용하면 처벌을 받고, 도망인을 고발하면 포상을 받고, 自出의 경우 減刑을 받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즉 기본적으로 『二年律令』의 「亡律」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 그러나 『嶽麓書院藏秦簡(肆)』에는 城旦舂·白粲·城旦司寇 3자가 逃亡을 가면 모두 黥爲城旦舂으로 처벌을 받는데, 『二年律令』에는 “城旦舂亡, 黥, 復城旦舂. 鬼薪白粲也, 皆笞百”¹¹⁾으로 되어 있다. 鬼薪白粲이 도망가면 단지笞百에 처하는 것은 城旦舂이 도망가면 黥城旦舂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秦律과 漢律의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²⁾

2014年12月5日~7日,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와 湖南大學嶽麓書院이 연합하여 주관한 “秦簡牘研究國際學術研討會”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尉卒律」이었다. 『嶽麓秦簡』에는 「尉卒律」이외에 卒의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는 「郡卒律」·「廷卒令」·「四司空卒令」 등이 있다. 周海鋒은 ‘卒’을 ‘萃’로 보고 이를

10) 曹旅寧, 『『嶽麓書院秦簡(肆)』 「亡律」公布의 歷史意義』 簡帛網 2015-02-07.

11) 『二年律令』, 164簡.

12) 周海鋒, 『嶽麓書院藏秦簡(肆)의 內容和價值』, 『文物』 712(2015-9), 84면.

‘聚’·‘集’의 의미로 해석하고, 「尉卒律」을 縣尉와 관련된 律文의 彙集으로 이해하였다.¹³⁾ 周海鋒의 연구에 대하여는 陳偉는 2016년 簡帛網을 통하여 釋文과 斷句에 대한 정밀한 교정을 발표하였다.¹⁴⁾ 秦代에도 『二年律令』에 보이는 작위에 따른 차별적인 부적연령이 당연히 존재하였을 것이다. 「尉卒律」을 통하여 無爵者의 부적 연령이 18세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또 하나의 수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최근 邢義田先生은 「尉卒律」의 ‘卒’을 ‘萃’로 보고 이를 ‘聚’·‘集’의 의미로 해석한 周海鋒의 견해와 달리 ‘卒’을 倅로, 즉 副로 해석하여 尉卒律 → 尉倅律 → 尉副(附)律로 해석하는 新說을 제시하였다.¹⁵⁾ 이에 따르면, 「尉卒律」은 「尉律」에 從屬, 旁附, 附加의 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尉律」에 언급하지 않는 바를 보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邢義田은 「尉卒律」의 성격이 漢初의 「傍章」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하는 견해를 제시한다. 요컨대, 「尉卒律」·「郡卒律」·「廷卒令」·「四司空卒令」은¹⁶⁾ 秦의 律令上 부족한 바를 卒律 혹은 卒令으로 보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漢律은 律, 令, 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律은 正律과 傍章으로 구분된다. 정률은 九章律을 가리키고, 傍章은 叔孫通의 傍章 18편, 趙禹의 朝律 6편과 張湯의 越宮律 27편으로 구성된다. 더욱이 文穎은 九章律을 律經으로 일컫고 있다. 『晉書』 「刑法志」에 기재된 傍章 및 朝律, 越宮律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傳世文獻에 기재된 『九章律』 이외의 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漢代 법제사 내지는 중국 고대 법제사의 기본문제였고, 중국 법률체계의 특질 및 구조와 관계된 것이었다. 「尉卒律」을 漢의 傍章으로 파악한 邢義田의 견해는 아직 정식의 논문이라기보다는 簡帛網에 발표한 시론이지만, 秦·漢律令體系의 특질 및 구조를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秦·漢律令體系와 관련하여 『嶽麓書院藏秦簡(肆)』에 보이는 20개의

13) 周海鋒, 「岳麓秦簡「尉卒律」研究」, 『出土文獻研究』第14集(北京: 中西書局, 2015).

14) 陳偉, 「尉卒律校讀(一)」, 簡帛網 2016-03-21; 陳偉, 「尉卒律校讀(二)」, 簡帛網 2016-03-21.

15) 邢義田, 「尉卒律臆解」, 簡帛網 2016-03-23.

16) 四司空은 少府에 속할 가능성이 높는데, 四司空 가운데 3개는 左司空, 右司空, 宮司空일 가능성이 높다.

律名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興律」이었다. 「興律」의 출현은 자연히 蕭何가 제정한 『九章律』에 대한 학설에 의문을 또 다시 제기하게 하였다. 戰國時代 魏나라 李悝의 『法經』부터 魏律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晉書』 「刑法志」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漢律의 律은 正律과 傍章으로 구분된다. 正律은 叔孫通의 傍章 18편, 趙禹의 朝律 6편과 張湯의 越宮律 27편으로 구성된다. 文穎은 九章律을 律經으로 일컫고 있다. 『晉書』 「刑法志」와 『唐六典』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법전인 『法經』은 戰國 시기에 李悝가 각국의 刑法을 정리하여 편찬한 법전으로 「盜法」, 「賊法」, 「囚法」, 「捕法」, 「雜法」, 「具法」 등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法經』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晉書』 「刑法志」나 『唐律疏議』, 그리고 『唐六典』이나 『通典』 등 후대의 역사서에서는 『法經』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만, 정작 『史記』나 『漢書』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秦의 法制를 계승한 漢에서는 蕭何가 秦律 6편에 「興律」, 「廐律」, 「戶律」 등 3편을 추가하여 『九章律』을 제정한 것으로 문헌사료는 전하고 있다.¹⁷⁾ 그런데, 蕭何의 『九章律』 가운데 「戶律」은 이미 『睡虎地秦簡』에 보이고, 「廐律」은 『睡虎地秦簡』의 「廐苑律」의 簡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興律」마저 『嶽麓秦簡』에 나오기 때문에 蕭何가 漢初 처음으로 제정하였다고 하는 「戶律」·「廐律」·「興律」이 秦律에 모두 漢初 이전인 秦代에 이미 제정된 것이 입증되게 되었다.¹⁸⁾ 실은 이와 유사한 문제는 『二年律令』에서도 제기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二年律令』에서 나온 27개의 律 가운데 7개 律을 제외한 나머지 20개는 모두 『九章律』에서 제외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二年律令』 및 傳世文獻 중 九章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은 九章 아래의 二級律篇에 해당한다는 견해, 혹은 傳世文獻과 간독 문서 중에 언급되는 律名은 律典의 篇名인 경우도 있고, 관련된 律條의 類名인 경우도 있으며, 某條律文의 명칭인 경우도 있다

17) 『晉書』 권30, 「刑法志」, 922면; 『唐六典』 권6 「尙書刑部」注, 180면.

18) 周海鋒, 「岳麓書院藏秦簡(肆)의內容和價值」, 『文物』 712(2015-9), 84면; 曹旅寧, 「《岳麓秦簡》(肆)概述與《法經》辨偽」, 簡帛網 2016-03-23.

고 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¹⁹⁾ 이에 대하여 『嶽麓書院藏秦簡(肆)』에 보이는 20개의 律名과 『九章律』 가운데 하나인 「興律」의 출현은 蕭何가 제정한 『九章律』과 『二年律令』이후 제기된 그 동안의 논쟁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 틀림없다.

2. 『嶽麓秦簡』의 秦令

秦令의 존재 여부는 秦漢律令의 연구상에서 장기간 중요한 논쟁 주제로 등장하였다. 秦令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中田薰, 大庭脩, 富谷至 등이다.²⁰⁾ 이들은 睡虎地秦簡에는 오직 律만 확인되므로, 律을 보완하는 것도 律이며, 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中田薰은 “律과 令이라는 統治의 2大根本法典은 漢蕭何의 立法에서 시작되었는데, 律은 傳來의 編次를 再編整備하고, 令은 종래 개개의 單行法令에 불과했던 것을 律에 필적하는 일부의 法典으로 分集했다.”²¹⁾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張建國·堀敏一·宮宅潔씨 등은²²⁾ 秦令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이다.²³⁾ 秦漢의 율령의 개념에 대하여 堀敏一은 秦代에 單行法令으로서 나온 ‘令’이 정리되어 일정한 정도로 법전화한 것이 ‘律’이라고 하였다. 秦과 漢의 차이는 令이 단순한 단행법령이 아니라 법전으로서 성립해 있던 것에 있다고 하였다.²⁴⁾ 宮宅潔은 『睡虎地秦墓竹簡』의 「語書」에 「田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적어도

19) 楊振紅, 「出土法律文書與秦漢法律二級分類構造」, 『出土簡牘與秦漢社會』(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于振波, 「淺談出土律令名目與『九章律』的關係」, 『湖南大學學報』 24-4(2010), 37-40면.

20) 中田薰, 「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 『比較法雜誌』 1-4(1951); 「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補考」, 『法制史研究』 3(1952); 大庭脩, 『秦漢法制史の研究』(東京: 創文社, 1982.); 富谷至, 「晉泰始律令への道 - 第一部 秦漢の律と令」, 『東方學報』 72(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0); 이상에 대해서는 李俊強, 『魏晉令制研究』(吉林大學博士論文, 2014), 30-31면.

21) 中田薰, 「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比較法雜誌』 1-4, 1951), 6면; 「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補考」(『法制史研究』 3, 1952), 70면.

22) 張建國, 「秦令與睡虎地秦墓竹簡相關問題略析」, 『帝制時代的中國法』(法律出版社, 1999); 堀敏一, 「晉泰始律令の成立」,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 私の中國史學(二)』(汲古書院, 1994); 宮宅潔, 「漢令の起源とその編纂」, 『中國史研究』 5(1995).

23) 이상은 任仲熾, 「秦漢 율령사 연구의 제문제」, 『中國古中世史研究』 37(2015), 6-7면을 참고.

24) 堀敏一, 앞의 글, 34-36면.

시황20년 시점에서는 ‘律’과 성격을 달리하는 ‘令’인 규범이 존재하고 더욱 그것이 상항별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富谷至는 漢代의 『九章律』은 기본법, 『傍章』은 副法이자 單行法, 『朝律』 및 『越宮律』은 追加法으로 이해한다. 즉 秦에서 晉에 이르는 동안 律의 篇目이 증가한 상황을 단행·추가법이 법전 중에 차례대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²⁶⁾ ‘漢令’은 황제의 조령이 그대로 편찬·정리된 것이라 해도 단순한 과일로서의 번호를 가질 뿐 여전히 追加·集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항에 따른 명칭도 부여되지 않은 미성숙한 법령이자 법규였다고 한다. 이러한 ‘漢令’이 전적으로 令典이 되고 또한 그 내용상 행정법규로서 변모되었던 것은 秦 泰始 4년의 晉令을 효시로 하며, 이로써 律典(형벌법규), 令典(비형벌·행정법규) 두 개의 법전이 성립하였다고 한다.²⁷⁾ 이에 대하여 楊振紅은 『二年律令』 중 매우 많은 律條가 惠帝나 呂后 시기에 제정된 것에 주목하여 ‘制詔’ 형식으로 반포된 令이 편집과 가공을 거쳐 律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²⁸⁾ 楊振紅 이전의 연구는 소하의 『九章律』이후 제정된 율은 모두 ‘단행률’ 혹은 ‘추가율’로서 『傍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반해, 楊振紅은 황제가 반포한 ‘令’이 『九章律』에 본래의 律條가 있을 경우 그 律上에 직접 修改할 수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문헌사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漢代 ‘율’과 ‘영’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漢書』 권8, 『宣帝本紀』, 顏師古注: 文穎曰, 蕭何承秦法, 所作爲律, 今律經是也. 天子詔所增損不在律上者爲令(文穎은 “蕭何が 秦나라의 법을 계승하여 만든 것이 율이니, 지금의 『律經』이 이것이다. 天子가 詔를 내려 增損한 바로서 율에 포함

25) 宮宅潔, 앞의 글, 116-117면.

26) 富谷至, 앞의 글, 90-91면.

27) 富谷至, 위의 글, 123면; 富谷至, 『晉泰始律令への道-第二部 魏晉の律と令』, 『東方學報』 73(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1), 83면.

28) 楊振紅, 『『二年律令』의 性質與漢代法系』, 『出土簡牘與秦漢社會』(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52-60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습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② 『史記』 권123, 「杜周傳」: 前主所是著爲律, 後主所是疏爲令(前주가 옳은 바를 드러내서 율로 삼고, 後주가 옳은 바를 나누어서 영으로 삼는다).

③ 『鹽鐵論』 권10, 「詔聖」: 春夏生長, 聖人象而爲令, 秋冬殺藏, 聖人則而爲法, 故令者教也, 法者刑罰也(봄과 여름에는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니, 聖인이 땅을 본받아 영을 만들었고, 가을과 겨울에는 수확하고 저장하니, 성인(聖人)이 하늘을 본받아 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영이란 교화이고 법이란 형벌이다).

④ 『唐六典』 권6, 「尙書刑部」: 律以正刑定罪, 令以設範立制(율로써 刑을 바르게 하고 罪名을 定하며, 영으로써 규범을 설정하고 제도를 세운다).

⑤ 『太平御覽』 권638에서 인용한 杜預의 「律序」: 律以正罪名, 令以存事制(율로써 罪名을 바르게 하고, 영으로써 제도[事制]를 보존한다).

①과 ②에 따르면, 律은 기본법[正律]이고 습은 單行法·追加法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③, ④, ⑤에 의하면, 律은 형벌법규이고 습은 비형벌·행정법규로 파악할 수 있다.²⁹⁾ 그런데, 『嶽麓秦簡』에는 秦습의 존재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을 불허하는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陳松長씨가 2009년과 2015년에 걸쳐 『文物』에서 그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³⁰⁾ 이하 陳松長씨가 소개한 『嶽麓秦簡』의 「律令雜抄」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죽간의 상단에는 墨丁(●)이 있고, 습명의 후면에 干支의 編序가 나오는 것으로 아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0355 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甲

0690 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乙

0522 內史郡二千石官共令第丙

29) 楊振紅, 「出土法律文書與秦漢法律二級分類構造」, 『出土簡牘與秦漢社會』(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39면.

30) 陳松長, 「嶽麓書院所藏秦簡綜述」, 『文物』 2009-3; 陳松長, 「嶽麓秦簡中的兩條秦二世時期令文」, 『文物』 2015-9.

0351 内史郡二千石官共令第丁

0465 内史郡二千石官共令第戊

0316 内史郡二千石官共令第己

0617 内史郡二千石官共令第庚

위의 “内史郡二千石官共令”은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8매의 簡으로 여기에 보이는 墨丁은 모두 令의 篇名으로 그 앞에는 마땅히 구체적인 令文 條款이 나와야 한다. 内史와 郡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令으로 甲~庚까지 7개로 정리된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형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郡卒令”、“谒令”、“食官共令” 등이 있다.

둘째는 완전한 내용의 일조의 令文이 나오고 말미에는 令名이 注記되고, 그 뒤에 干支와 숫자가 기록된다. 그 사례로 陳松長은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1768 ●内史旁金布令乙四

1921 内史仓曹令甲卅

1105 ●县官田令甲十六

1775 ●迁吏令甲廿八

1173 ●恒署书皆以邮行. ●卒令丙二

陳松長은 위와 같이 干支와 숫자가 기록된 형태가 당시 秦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며³¹⁾ 이러한 간지와 숫자를 조합한 편호는 秦令이 통일편찬 과정을 거쳐 정리될 것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³²⁾ 즉 任仲燮씨의 견해대로 秦令의 숫자가 많았거나 앞으로 편제할 것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³³⁾

셋째로 令文의 내용만 나오고 令名이 없고 편호만 기록된 것으로 다음과

31) 陳松長, 『嶽麓書院所藏秦簡綜述』, 『文物』 2009년 3기, 86면.

32) 周海鋒, 『嶽麓書院藏秦簡(肆)의 내용과價值』, 『文物』 712(2015-9), 83면.

33) 任仲燮, 앞의 글, 10면.

같은 것이 있다.

1104 官府及券书它不可封闭者, 财, 令人谨守卫, 须其官自请报, 到, 乃以从事. ●

十八

넷째로 令文의 내용을 완전히 기록한 뒤에 “廷”、“廷卒”과 干支 혹은 编号가 기록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087 律·谨布令, 令黔首明智(知). ●廷一

1617 □官官所治, 它官狱者治之. ●廷卒甲二

위의 “廷”、“廷卒”은 모두 “廷卒令”을 생략한 표현이다. 『嶽麓秦簡』에 보이는 秦令으로는 아래와 같은 20여종이 확인되고 있다.³⁴⁾

内史郡二千石官共令、内史官共令、内史仓曹令、内史户曹令、内史旁金布令

四谒者令、四司空共令、四司空卒令

安□居室居室共令、□□□又它祠令、辞式令

尉郡卒令、郡卒令、廷卒令、卒令

县官田令、食官共令、给共令、赎令

迁吏令、捕盗贼令、挟兵令、稗官令

1104의 ●十八, 1087의 ●廷一, 1617 ●廷卒甲二는 令名+編號를 사용하는 점이 주목되며, 詔의 전체 문장을 베껴 쓴 것이 아니라 핵심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의 형식은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에 보이는 律文과 동일하지만, 編號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³⁵⁾

이상의 陳松長의 분류는 令의 編號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었다. 이와 달

34) 위와 같음.

35) 廣瀬薫雄, 『秦漢律令研究』(東京: 汲古書院), 2010, 136면.

리 廣瀨薰雄은 漢令의 분류방식을 도입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① 官名+ 令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 四謁者令, 尉郡卒令

② 事項別令

(官名+ 事項)

內史旁金布令, 四司空卒令, 郡卒令, 廷卒令, 縣官田令

(事項)

□□□又它祠令, 辭式令, 卒令, 贖令, 遷吏令, 捕盜賊令, 挾兵

令, 稗官令

③ 共令

(官名+ 共令): 內史郡二千石官共令, 內史官共令, 四司空共令,

食官共令

(事項+ 共令): 安□居室居室共令, 給共令

① 官名+ 令은 漢代의 官府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掣令과 동류의 것이며, 다만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과 같이 內史아래의 部署까지 세분화된 점이 漢의 掣令과 다르다. ② 事項別令은 漢代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사항 앞에 官署名이 붙어있는 예는 漢代의 事項別令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內史旁金布令”은 漢에서는 그냥 金布令으로 할 뿐이다. 이것은 官署가 특정의 업무에 관한 令만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共令은 漢令에 없는 호칭이다. 이것은 복수의 관서 또는 사항에 공통하는 令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①이 官府하나의 단독사용인 것과는 반대개념이다. 內史郡二千石官共令은 內史와 二千石官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令의 의미이고, 內史官共令은 內史의 모든 官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令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재차 官署마다 나눈 것이 ①의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이다. 이것은 內史가운데 倉曹또는 戶曹만이 사용하는 令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內史旁金布令은 內史공통의 金布令이라는 뜻이다. 旁令은 共令의 동의어로 생각되는데, 旁令의 旁

은 “두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³⁶⁾

『嶽麓書院藏秦簡』의 秦令에서, 漢令의 掣令과 事項別令에 상당하는 2種은 확인할 수 있으나, 干支令에 상당하는 令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內史郡 二千石官共令이 甲乙丙으로 나뉘는 것에서 干支令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또 令에 編號가 붙어있는 점도 동일하다. 결국 秦令의 정리방법은 漢令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漢의 掣令은 御史掣令·廷尉掣令·光祿掣令·大鴻臚掣令등 중앙의 이천석관 이상의 것이 많다. 이에 대해서 嶽麓書院藏秦簡의 秦令은 內史倉曹令, 內史戶曹令과 같이 內史아래의 部署에 바탕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編號를 붙이는 방법도 十干과 숫자를 조합한 것이 많고, 숫자만의 編號보다도 분류가 복잡하고 세밀하다. 이러한 번쇄한 令集을 차례로 통합하여 漢代에 이르면 干支令·掣令·事項別令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정리방법이 나타났을 것이다.³⁷⁾

2015년 陳松長이 발표한 秦二世 時期의 아래와 같은 令文도³⁸⁾ 주목된다.

① 泰上皇時內史言：西工室司寇·隱官·踐更多貧不能自給糧. 議：縣令遣司寇入禾其縣，毋禾(0587)當貸者，告作所縣償及貸. 西工室伐干沮·南鄭山，令沮·南鄭聽西工室致. 其入禾者及吏移西(0638)工室. ●二年曰：復用.

② 昭襄王命曰：置酒節(卽)征錢及它物以賜人，令獻(讞)，丞請(情)出；丞獻(讞)，令請(情)出，以爲恒. ●三年詔曰：(0519)復用.(0352)

①의 “泰上皇時內史言”은 令을 發布할 때의 秦漢 시기의 格式 용어로 『二年律令』의 “御史言”·“相國上內史書言”·“相國上內史書言”³⁹⁾ 등의 형식과 같다. 이것은 특정기관의 事項別令의 令文格式에 해당한다. 太上皇은 秦 莊襄王이다. 司寇·隱官·踐更은 西工室에서 노역에 종사하던 3종류의 노역인

36) 廣瀨薰雄, 위의 책, 108-109면.

37) 廣瀨薰雄, 위의 책, 109-110면; 이상 廣瀨薰雄의 漢令의 분류방식은 任仲燮, 앞의 글, 10-11면과 동일하다.

38) 陳松長, 『嶽麓秦簡中的兩條秦二世時期令文』, 『文物』 2015년 9기, 88-91면.

39) 이상은 『二年律令』 488簡, 496簡, 512簡.

들을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으므로 파견한 현에서 그들의 田租를 대신 납부하라는 것이다. “西工室伐干沮・南鄭山”은 西工室은 秦國 都城의 기계제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漢中郡에서 관할하는 沮와 南鄭의 양현에서에서 나무를 벌채하라는 의미이다. “令沮・南鄭聽西工室致”는 內史가 沮・南鄭縣으로 하여금 西工室에서 보낸 문서에 근거하여 벌목의 편의를 도와주라는 의미이다. “其入禾者及吏移西工室”의 ‘移’는 移書로 沮와 南鄭의 양현에서에서 나무를 벌채하는 司寇・隱官・踐更으로 가난해서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어서 노역으로 入禾를 대신하는 자와 참여하는 관리의 인원 수를 문서에 옮겨서 西工室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⁴⁰⁾ 간문의 내용은 “泰上皇時內史言”의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은 秦漢 시기의 ‘決事比’에 해당한다. 의거한 바는 이른 바 ‘故事’이다. ②의 令文 역시 秦國의 前朝의 律令文에서 一條를 引用한 것으로 ①에서는 泰上皇時의 구체적인 事項條文이고 ②는 昭襄王 시의 令文을 復用한다는 것이다.⁴¹⁾

秦二世 時期의 위의 令文과 관련해서는 『晉書』 『刑法志』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漢令의 내용이 주목된다.

漢나라 때의 決事를 모아 『令甲』 이하 300여 편을 만들었고, 사도포공(鮑昱)이 혼인(嫁娶)에 관한 『사송결』⁴²⁾을 편찬하고 『법비도목』을 지었으니 모두 906권이 었다. 대대로 증감이 이루어졌으니, 분류별로 모아서 篇을 만들고 사례별로 묶어서 章을 만들었다. 하나의 章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사례가 수 십 개를 넘어 사례의 분류가 비록 같더라도 그 輕重에는 사뭇 차이가 있었다.⁴³⁾

中田薰씨는 “漢의 令典은 律典과 같이 질서 있는 法典이 아니라, 前皇帝의

40) 陳松長, 앞의 글, 90면.

41) 陳松長, 위의 글, 91면.

42) 『東觀漢記』 권14 『鮑昱傳』와 『後漢書』 권76, 『陳寵傳』에는 “辭訟比”라고 하였다.

43) 『晉書』 권30, 『刑法志』, 922-923면, “漢時決事, 集爲令甲以下三百餘篇, 及司徒鮑公撰嫁娶辭訟決爲法比都目, 凡九百六卷. 世有增損, 集類爲篇, 結事爲章. 一章之中, 或事過數十, 事類雖同, 輕重乖異.”

詔令을 황제의 사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갑을병 등의 諸篇으로 分集한 詔令集이다.”⁴⁴⁾라 하여 漢 令典을 단행령의 집합, 즉 단순한 詔令集으로 이해한다. 甲乙丙의 干支를 갖는 『令甲』, 『令乙』, 『令丙』과 같은 간지령에 대해서는 ① 연대의 선후, ② 편목의 차례, ③ 諸令에 각각 甲·乙·丙이 있다는 주장, ④ 集類의 4가지 의견이 있다.⁴⁵⁾ 어쨌든 漢의 干支令에 대하여 상기 『晉書』 『刑法志』에서는 決事比를 모아 편집한 것이 『令甲』 이하 300여 편이라고 하고 있다. 廣瀨薰雄은 漢의 干支令이 編號가 발포순으로 붙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⁴⁶⁾ 富谷至의 지적처럼 간지령의 편호가 발포순으로 붙였을 것이라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⁴⁷⁾ 『晉書』 『刑法志』에서는, “분류별로 모아서 篇을 만들고 사례별로 묶어서 章을 만들었다”라 하는 것을 참조하면, 詔令을 모아둔 詔令集도 기본적으로는 법전인 율, 혹은 텍스트를 만드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宮宅潔은 『居延漢簡』, 『二年律令』 『津關令』의 사례를 근거로 “令典은 詔令集인 까닭에 그 본문은 본래 조서의 서식이고, 내려진 조서는 年次에 의해서 정리되고, 보존되지만, 그 令典에 수록되어야 할 詔令은 사항별로 분류되어서 令典에 추가되고, 차례로 令典이 형성되어 간다. 그 후 각 항목마다 令條文에 一連番號가 매겨지고, 이용할 때에 편의가 꾀해진다.”라 하고 있다.⁴⁸⁾ 干支令도 연대의 선후·편목의 차례·諸令에 각각 매겨진 것·集類 그 어딘가에 해당되겠지만, 각 항목마다 令條文에 一連番號가 매겨진 것처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분류인 것은 분명하다. 令典인 詔令集은 기본적으로 秦二世 時期의 令文처럼 決事比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令은 최초에 상급명령이었고 하급기관에 대한 집행력은 있었지만, 국가의 법률형식은 아니었다. 일단 漢令은 국가의 법이었고, 皇帝와 大臣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제정된 것으로 황제 개인의 지령으로 볼

44) 中田薰, 「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 『比較法雜誌』 1-4(1951), 7면.

45) 張忠煒, 『秦漢律令法系研究初編』(社會科學出版社, 2012), 112면.

46) 廣瀨薰雄, 앞의 책, 102면.

47) 富谷至, 앞의 글, 111면.

48) 宮宅潔, 앞의 글, 200면.

수 없다.⁴⁹⁾ 『嶽麓秦簡』에 다량의 秦습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서 秦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을 불허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秦습과 漢습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秦律에서 漢律로의 전개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듯이 秦습과 漢습으로의 展開過程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틀림 없다. 상급명령으로 시작된 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서서히 국가의 법령으로 변화해갔는가? 또는 秦습에서 漢습으로 전개과정에서의 어떠한 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등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과제가 남아있다.

Ⅲ. 戰國秦~漢初의 罰金刑·贖刑

最近 公開된 『里耶秦簡』과 『嶽麓秦簡』에는 秦代의 貲1甲·貲1盾 등의 貨幣換算額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根據로 한 새로운 研究成果도 발표되었다.⁵⁰⁾ 秦에서의 貲罰刑의 種類와 關聯해서는 ‘貲一盾’·‘貲二盾’·‘貲一甲’·‘貲二甲’으로 이뤄졌다는 說과⁵¹⁾ ‘貲1盾’·‘貲1甲’·‘貲2甲’으로 이뤄졌다는 說로 나뉘어져 있다.⁵²⁾ 또한 秦·漢의 罰金刑과 贖刑과 관련하여 富谷至는 漢文帝 刑制改革 이후 漢律에 보이는 모든 刑罰에 대하여 贖刑은 成文法的 規定을 가진 恒常的인 것이 아니라 限時的인 措置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漢文帝 刑制改革에 의해서 贖刑은 勞役刑 중에서 吸收되었다고 하고 있다.⁵³⁾ 이에 대하여 水間大輔씨는 贖刑은 罰金刑에 吸收되었다고 보고 있다.⁵⁴⁾ 秦

49) 南玉泉, 「秦令의 演化及其在法律形式中的地位」, 『考古與文物』 2005-2, 60면.

50) 于振波,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集刊』 2010-5期; 田村誠, 「嶽麓書院 『數』譯注稿(2)」, 『大阪産業大學論集』(人文·社會科學編)17, 2013년 2월; 林炳德, 「秦에서 漢으로의 罰金刑과 贖刑의 變化와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134, 2016.

51) 于振派, 앞의 논문; 富谷至, 『秦漢刑罰制度の研究』(同朋舍, 1988), 66면.

52) 任仲燮, 「秦漢律의 罰金刑」, 『中國古中世史研究』 15輯(2006), 14-15면; 若江賢三, 「秦律における贖刑制度(上)」,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 18(1985); 若江賢三, 「秦律における贖刑制度(下)」,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 19(1986); 石洋, 「戰國秦漢間“貲”의 字義演變與其意義」, 『華東政法大學學報』 89(2014-4); 水間大輔, 「秦律·漢律의 刑罰制度」, 『秦漢法制研究』(東京: 知泉書館, 2007).

53) 富谷至, 앞의 책, 194-206면.

54) 水間大輔, 앞의 글, 71면.

代의 賞罰刑은 ‘賞 1甲’·‘賞 1盾’ 등의 形態로 나타난다. 『岳麓書院秦簡』에 의해 賞는 甲·盾에 의해, 贖은 馬甲을 單位로 하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 『里耶秦簡』의 賞罰刑과 贖刑

『里耶秦簡(壹)』에 앞서 出刊된 『里耶發掘報告』에는 다음과 같이 陽陵縣의 士伍의 賞錢 혹은 贖錢에 대한 記錄이 나오고 있다.

- ① …, 陽陵宜居士五(伍)毋死有賞, 餘錢八千六十四(J1[9]1號簡)
- ② …, 陽陵仁陽士五(伍)…有賞錢八百卅六(J1[9]2號簡)
- ③ …, 陽陵下里士五(伍)不識…有賞, 餘錢千七百廿八(J1[9]3號簡)
- ④ …, 陽陵孝里士五(伍)衷有賞錢千三百卅四(J1[9]4號簡)
- ⑤ …, 陽陵下里士五(伍)鹽有賞錢三百八十四(J1[9]5號簡)
- ⑥ …, 陽陵禔陽上造徐有賞錢二千六百八十八(J1[9]6號簡)
- ⑦ …, 陽陵禔陽士五(伍)小欵有賞錢萬一千二百一十一(J1[9]7號簡)
- ⑧ …, 陽陵逆都士五(伍)越人有賞錢千三百卅(J1[9]8號簡)
- ⑨ …, 陽陵仁陽士五(伍)…有贖錢七千六百八十(J1[9]9號簡)
- ⑩ …, 陽陵戚作士五(伍)勝一有賞錢千三百卅四(J1[9]10號簡)
- ⑪ …, 陽陵谿里士五(伍)采有賞, 餘錢八百五十二(J1[9]11號簡)
- ⑫ …, 陽陵□□公卒廣有賞錢千三百卅四(J1[9]12號簡)

盾·甲·兩·馬甲을 1日 勞役 6錢 혹은 8錢으로 計算하면 ①~⑫에 나오는 賞錢 혹은 贖錢은 대체로 그 倍數에 該當한다. 다만, ②의 賞錢836錢을 6錢으로 計算하면 139⅓日, 8錢으로 計算하면 104½日이 되지만, 8錢과 6錢을 適切히 組合하여 나누면 倍數가 된다. ⑪의 賞餘錢 852錢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秦代에는 黃金이나 錢을 提出하는 것 이외에도 布帛·粟米·馬牛 및 奴隸를 提出하여 賞刑과 贖刑을 減免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⁵⁵⁾

한편 『里耶秦簡(壹)』에는 다음과 같은 褒賞金에 대한 規定이 나온다.⁵⁶⁾

① 豎捕戍卒□□事贖耐罪賜, 購千百五十二(8-1008號簡+8-1461號簡+8-1532號簡)

② 購錢五百七十六一人(8-1018號簡)

③ 錢三百五十. 卅五年八月丁巳朔癸亥, 少內沈出以購吏養城父士五得. 得告戍卒贖耐罪惡(8-1572號簡+8-1572號簡).

④ 廿八年五月己亥朔甲寅, 都鄉守敬敢言之: 得虎, 當復六人, 人一牒, 署復□于…從事, 敢言之(8-170號簡)

⑤ 出錢千一百五十二購隸臣于捕戍卒不從…(8-992號簡)

①~⑤의 褒賞金은 ③과 ④를 除外하고 金1兩과 2兩으로 되어있는 것이 注目된다. ①의 褒賞金은 1,152錢으로 1,152錢은 金2兩에 해당한다. ②의 576錢은 金1兩. 그러나 ③의 350錢은 金과의 對應關係가 不分明하다.⁵⁷⁾ ④는 褒賞으로 勞役免除.

한편, 『睡虎地秦簡』의 褒賞金 規定으로 金2兩 1,152錢이 나오고 있고,⁵⁸⁾ 『嶽麓秦簡』의 死罪 褒賞金에는 40,320錢, 80,640錢이 보이는데, 이는 金70兩, 金140兩에 該當한다.⁵⁹⁾ 즉 秦에서의 犯罪者에 對한 逮捕와 이에 대한 褒賞金은 대체로 金1兩을 그 單位로 하였다고 생각된다.⁶⁰⁾ 金1兩의 單位는 褒賞金만이 아니라 貨錢 혹은 贖錢의 액수와 關係해서도 그 기준이 되는 單位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5) 池田夏樹, 『戰國秦漢期における贖刑の方法と制度の運用』(『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 28, 2004), 9면.

56) 以下の『里耶秦簡(壹)』의 史料는 陳偉, 『里耶秦簡に見える秦代行政と算術』, 『大阪産業大學論集』(人文・社會科學編) 19(2013), 13-14면에 의한다.

57) 陳偉, 前掲論文, 14면.

58) 『睡虎地秦簡』 「法律答問」7號簡(陳偉主編, 『秦簡牘合集』 武漢大學出版社, 2014), 251면.

59) 『嶽麓書院藏秦簡(參)』(朱漢民・陳松長 主編, 上海辭書出版社, 2013), 018~023號簡, 14면.

60) 이상은 林炳德, 『秦代の罰金刑과贖刑』, 『中國史研究』 134(2016), 23-31면에 의한다.

2. 貲罰刑에서 罰金刑으로의 변화

『睡虎地秦簡』과 『里耶秦簡』에는 貲罰로 ‘貲1盾’·‘貲2盾’·‘貲7盾’·‘貲1甲’·‘貲2甲’·‘貲3甲’·‘貲4甲’·‘貲6甲’·‘貲7甲’·‘貲14甲’·‘貲布’·‘貲絡組’·‘貲徭’·‘貲戍’ 등이 나오고 있다.⁶¹⁾ 이외에도 漢初까지 ‘貲’라는 用語가 사용된 事例로 『二年律令』 『興律』에는 ‘貲日廿二錢’이 보인다.⁶²⁾ 따라서 『二年律令』을 前後로 한 時期에 貲罰의 名稱은 消滅되었을 것이고, ‘罰金’이라는 名稱이 『秦簡』에 보이지 않는 점에서 罰金이라는 名稱은 漢初에 成立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岳麓秦簡』以後에도 秦의 罰金刑은 ‘貲一盾’·‘貲二盾’·‘貲一甲’·‘貲二甲’이라는 4段階로 이뤄졌다는 說⁶³⁾과 ‘貲1盾’·‘貲1甲’·‘貲2甲’으로 보아야 合理的이라는 主張⁶⁴⁾이 提出된 狀態이다. 秦簡에는 貲一盾의 2배되는 處罰로 생각되는 貲二盾은 겨우 1例만 나오고 있다.⁶⁵⁾ 이런 이유로 貲二盾이 貲罰의 系統에서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만약 貲二盾이 없다면, 그 比率은 언뜻 보기에 1 : 2 : 4가 된다. 즉 『二年律令』에서의 罰金一兩, 二兩, 四兩과 比率이 一致하는 것처럼 보인다.⁶⁶⁾ 秦 罰金刑 3等級說을 主張하는 論者들은 大體로 貲二盾 = 貲一甲이라는 立場을 取하였다. 그런데, 最近 公開된 아래의 『岳麓書院藏秦簡(貳)』에 의해 貲一盾, 貲一甲, 貲二甲의 等級 比率을 1 : 2 : 4로 볼 수 없게 되었다.

① 貲一甲 直錢千三百卅四, 直金二兩一垂. 一盾直金二垂. 贖耐, 馬甲四 錢七千六百八十(0957號簡).

② 馬甲一 金三兩一垂 直錢千□百廿. 金一朱(銖) 直錢廿四. 贖死, 馬甲十二, 錢

61) 徐富昌, 『睡虎地秦簡研究』(文史哲出版社, 1993), 330-331頁;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里耶秦簡(壹)』(北京: 文物出版社, 2012), 8-60號簡, 8-149號簡, 8-489號簡, 8-300號簡.

62) 『二年律令』(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北京: 文物出版社, 2006), 401號簡.

63) 于振波, 앞의 글, 38면.

64) 石洋, 앞의 글, 157면; 水間大輔, 앞의 글, 68면, 72면.

65) 『睡虎地秦簡』(陳偉主編, 『秦簡牘合集』 武漢大學出版社, 2014), 『秦律雜抄』 27號簡, 181-182면.

66) 『二年律令』, 129-130簡, “贖死罪贖城旦舂, 贖城旦舂罪贖斬, 贖斬罪贖黥, 贖黥罪贖耐, 耐罪 𠄎金四兩罪罰金二兩, 罰金二兩罪罰金一兩. 令丞, 令史或徧先自得之, 相除.”

二萬三千冊(0970號簡).

③ 廿四朱(銖)一兩. 三百八十四朱(銖)一斤. 萬一千五百朱(銖)一鈞. 四百八十兩一鈞(0646號簡).

④ 十六兩一斤. 卅斤一鈞. 四鈞一石(0458號簡).

⑤ 四萬六千八十朱(銖)一石. 千九百廿兩一石. 百卅斤一石(0303號簡).

『嶽麓秦簡(貳)』의 ①~⑤에 의해, 金1銖 24錢, 貲一甲 1344錢, 貲1盾 384錢, 1馬甲은 1,920錢, 1鍾는 8銖, 金1兩 576錢 등이 밝혀졌다.⁶⁷⁾

『嶽麓書院藏秦簡(貳)』에 의해 秦代의 貲1甲은 1,344錢, 貲1盾=384錢, 1馬甲 1,920錢, 1兩 576錢인 것이 確認되고, 貲는 甲·盾에 의해, 贖은 馬甲을 單位로 하는 것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貲나 贖에 대한 基準價와 換算額이 밝혀지면서 秦律의 法體系 內에는 罰金이라는 發想은 없었으며, 罰金刑의 直接的인 由來를 秦律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는⁶⁸⁾ 說得力을 잃게 되었다. 즉 漢律의 罰金刑과 贖刑은 秦代의 罰金刑과 贖刑을 繼承하면서 合理的인 調整이 있었던 것이 明確해졌다.

필자는 『二年律令』 『具律』에 보이는 漢律의 贖錢額과 『嶽麓秦簡(貳)』에서 確認된 贖耐, 贖死의 贖錢額을 基準으로 새로이 秦漢의 罰金刑과 贖刑에 대한 圖表를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⁶⁹⁾ 또한 이 과정에서 秦의 貲1盾과 貲2盾을 합치면, 1,152錢이고 이를 平均하면 秦의 金1兩 576錢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貲1盾의 錢價+貲2盾의 錢價 $\times\frac{1}{2}$ =576錢=秦의 金1兩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즉 『二年律令』에서는 罰金刑의 最小單位가 ‘罰金1兩’인데, 漢의 罰金1兩은 바로 秦의 貲1盾 \rightarrow 罰金1兩이 아니라 貲1盾과 貲2盾의 平均價格을 基準으로 算出되었음을 밝혔다. 贖刑의 경우, 漢의 贖遷이 8兩, 5,000錢이라면, 秦의 경우 3馬甲 5,760錢일 가능성이 높다. 反面에 贖刑의 最重刑인 贖死는 漢의 경우 2斤8兩 25,500錢인데, 秦은 12馬甲 23,040錢

67) 于振波, 앞의 글, 38면.

68) 藤田高夫, 『秦漢罰金考』, 『前近代中國의 刑罰』(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113면; 富谷至, 앞의 글, 191-194면.

69) 林炳德, 『秦에서 漢으로의 罰金刑과 贖刑의 變化와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134, 2016, 120면.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漢의 贖死 2斤8兩, 즉 40兩을 秦의 金1兩 576錢으로 계산하면 23,040錢, 즉 秦은 12馬甲과 동일하다.⁷⁰⁾

賞1盾의 錢價+賞2盾의 錢價 $\times\frac{1}{2}$ =576錢=秦의 金1兩으로 하고, 秦의 贖死 12馬甲 23,040錢 \div 576錢=秦의 金40兩으로 할 경우 그 中間에 配列된 秦의 罰金과 贖刑은 漢의 罰金처럼 倍數로 處理하기 困難하다. 그래서 筆者는 漢의 罰金刑과 贖刑은 秦의 賞1盾과 賞2盾의 平均價格에서 始作하여 秦의 贖死 12馬甲에 맞춘 것이며 그 中間의 罰金刑과 贖刑은 秦의 罰金刑과 贖刑의 近似值에 가까운 金額에 가까운 ‘兩’으로 配列하는 同時에 秦의 金1兩=576錢의 基準價를 金1兩=625錢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⁷¹⁾

秦漢의 罰金刑과 贖刑에 관한 필자의 이러한 연구는 필자의 종전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기존의 국내외 연구의 문제점을 거의 모두 부정하거나 비판한 것으로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기존의 학설과 다른 新說이었다는 점을 감히 강조하고 싶다.

다만, 筆者가 推定한 贖劓·贖黥 \rightarrow 5馬甲, 贖斬·贖腐 \rightarrow 6馬甲, 贖城旦春·贖鬼薪白粲 \rightarrow 7馬甲은 贖劓·贖黥 \rightarrow 6馬甲, 贖斬·贖腐 \rightarrow 7馬甲, 贖城旦春·贖鬼薪白粲 \rightarrow 8馬甲일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에서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睡虎地秦簡』과 『里耶秦簡』에는 賞罰로 ‘賞1盾’·‘賞2盾’·‘賞1甲’·‘賞2甲’이외에 ‘賞3甲’·‘賞4甲’·‘賞6甲’·‘賞7甲’·‘賞14甲’ 등이 보인다. 이 가운데 ‘賞4甲’이상은 贖刑의 체계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賞1盾’·‘賞2盾’·‘賞1甲’·‘賞2甲’의 4등급이 아니라 ‘賞1盾’·‘賞2盾’·‘賞1甲’·‘賞2甲’에 ‘賞3甲’을 추가하여 5등급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벌금형 몇가지 등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⁷²⁾

70) 林炳德, 위의 글, 121면.

71) 林炳德, 위의 글, 122면.

72) 王戰闊, 「再論秦簡中賞甲盾等級問題」, 簡帛網 2013-01-16에서는 秦의 賞罰刑을 ‘賞1盾’·‘賞2盾’·‘賞1甲’·‘賞1甲1盾’·‘賞2甲’·‘賞2甲1盾’·‘賞3甲’으로 보고 있다.

IV. 秦漢의 土地制度

1. 토지국유제설 · 토지사유제설 · 국유제와 사유제병존설

1950년대 이래 秦漢의 土地所有制의 성질 문제와 관련하여 ① 토지국유론, ② 토지사유론 ③ 국유·사유병존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③의 국유·사유병존론은 토지국유제, 대토지점유제, 대토지소유제, 소농토지소유제 등의 다종형태병존설과 유사하다. 국유·사유병존론자들은 정치권력이 경제상의 소유권의 최고지배권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경제권력의 상호독립성도 인정한다.⁷³⁾ 이러한 논쟁에서 한정된 서로 모순된 토지매매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秦漢의 土地所有制의 성질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토지매매를 승인하면 대체로 사유제, 그것을 부인하면 대체로 국유제론의 입장에 서게 된다.⁷⁴⁾ 한편, 1975년, 湖北省 雲夢睡虎地秦墓에서 1천여 매의 법률관계의 竹簡⁷⁵⁾, 즉 『睡虎地秦簡』이 발표되면서 이후 대체로 토지국유제설이 더욱 강조되었다. 授田制는 수전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토지국유제라 할 수 있고, 名田制는 호주의 명의 하에 등기되어 자손에게 세습되므로 토지의 장기점유제 혹은 토지사유제라 할 수 있는데, 수전 이후의 명전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사유제와 국유제설이 각각 대립하였다. 高敏은 商鞅의 “廢井田” 이후 토지제도는 봉건토지국유제와 사유제가 병존한 것이라 하여 양자의 견해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였다.⁷⁶⁾ 1979년 四川의 青川에서는 발굴된 『田律』,⁷⁷⁾ 1989년에는 雲夢龍崗 6호묘에서 출토된 『龍崗秦簡』⁷⁸⁾과 같은 考古資料는 秦·漢의 토지제도의 연

73) 閔桂梅, 「近五十年來秦漢土地制度研究綜述」(『中國史研究動態』 2007-7), 10-11면.

74) 閔桂梅, 위와 같음.

75)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睡虎地秦墓竹簡』(北京: 文物出版社, 1978).

76) 高敏, 「從雲夢秦簡看秦的土地制度」(『雲夢秦簡初探』, 河南人民出版社), 155-164면.

77) 四川省博物館·青川縣文化館, 「釋青川秦墓木牘」(『文物』, 1982-1); 于豪亮, 「青川縣出土秦更修田律木牘—四川青川縣戰國墓發掘簡報(J)」(『文物』, 1982-1); 李昭和, 「青川出土木牘文字簡考」(『文物』, 1982-1); 楊寬, 「釋青川秦牘的田畝制度」(『文物』, 1982-7); 黃盛萇, 「青川新出秦田律木牘及其相關問題」(『文物』, 1982-9).

78) 劉信芳·梁柱, 『雲夢龍崗秦簡』(科學出版社, 2001); 中國文物研究所·湖北省文物研究所, 『龍崗秦

구 상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는데, 이 보다 훨씬 획기적인 자료는 2001년 文物出版社에서 공개된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의 『二年律令』이었다. 여기에는 漢初의 授田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張家山漢簡』에 포함된 『二年律令』의 석문이 발표된 이후,⁷⁹⁾ 秦漢의 土地制度에 관한 연구는 종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70년대 후반 80년대에는 막연한 추론의 영역이었던 授田制의 구체적인 내용들, 예컨대 爵級에 따른 지급된 토지분량, 受田 자격, 상속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는 보다 실증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⁸⁰⁾

2. 『二年律令』 이후의 論爭

『二年律令』 戶律에 授田體制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漢의 授田體制는 秦의 授田制에서 기원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秦 土地國有制說의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授田制와 田地의 매매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授田制를 규정한 『二年律令』에 授田의 규정과 함께 田地의 매매를 허용한 규정이 동시에 나온 것이다.⁸¹⁾ 그렇다면 秦의

簡』(中華書局, 2001).

79)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北京: 文物出版社, 2006)과 彭浩·陳偉·工藤元男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80) 이에 대한 주요한 견해에 대한 소개는 閔桂梅, 앞의 글, 16면으로 미룬다. 이상의 연구사 소개는 林炳德, 「出土文獻에 보이는 秦漢 시기의 土地制度-法的 規定과 그 實際 및 授田制의 變化-」, 『中國史研究』 75, 2011, 1-3면에 의한다.

81) 『二年律令』의 석문이 발표된 이후의 토지제도에 관한 논문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주요한 논문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賈麗英, 「漢代“名田宅制”與“田宅逾制”論說」(『史學月刊』 2007-1); 高大倫, 「〈張家山漢簡田律〉與〈青川秦木牘為田律〉比較研究」(載張顯成主編 『簡帛語言文字研究』 第一輯, 巴蜀書社, 2002); 高敏, 「從張家山漢簡 『二年律令』看西漢前期的土地制度-讀張家山漢墓竹簡割記之三」(『中國經濟史研究』 2003-3); 馬新, 「論漢代土地占有形態及其矛盾運動」(『東岳論叢』 25-2, 2004); 宋文紅, 「秦農業法律制度探微」(『安徽農業科學』 34-4, 2006); 宋國華, 「對張家山漢簡 『20一條文的理解-與曹旅寧先生商榷』」(『簡帛研究網站』(2003-09-24)); 楊振紅, 「秦漢“名田宅制”說-從張家山漢簡看戰國秦漢的土地制度」(『中國史研究』 2003-3); 王彥輝, 「論張家山漢簡中的軍功名田宅制度」(『東北師大學報』 2004-4); 王彥輝, 「論漢代的分戶析產」(『中國史研究』 2006-4); 王彥輝, 「『二年律令·戶律』與高祖五年詔書的關係」,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1-1, 2007; 王彥輝 「對《二年律令》有關土地·賦·繼承制度中幾則釋文的思考」(『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

授田制에도 매매규정이 존재하였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서는 일찍이 秦의 授田制에도 매매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엄격한 토지국유제가 시행되었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⁸²⁾ 이에 대하여 박건주씨는 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⁸³⁾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임중혁씨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을 진행하였는데, 사유제설에 무게를 두고 국유제와 사유제병존설의 견해를⁸⁴⁾ 취하였다. 필자는 秦의 授田制에 매매규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지를 전개하였다.⁸⁵⁾

『二年律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국시대의 토지제도가 토지국유제라고 주장하던 사유제라고 주장하던 양쪽 모두 漢代에 수전제가 존재하지 않고 사유제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⁸⁶⁾ 이러한 관점은 『二年律令』에 授田制가 확인되면서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⁸⁷⁾ 사유제가 시행되었다는 것

科學版) 2008-04); 王彥輝, 「試論《二年律令》中爵位繼承制度的幾個問題」, 『江蘇行政學院學報』 2009-2; 于振波, 「張家山漢簡所反映的漢代名田制」, 『簡帛研究網站』(2003-09-24); 于振波, 「簡牘所見秦名田制蠡測」, 『簡帛研究網站』(2004-01-11); 于振波, 「張家山漢簡中的名田制及其在漢代的實施情況」, 『中國史研究』 2004年第1期); 于振波, 「略論漢名田制與唐均田制之異同」, 『簡帛研究網站』(2004-10-27); 李翠麗, 「西漢授田制與漢初商品經濟的發展—“地山澤之禁”新釋—」, 『江南社會學院學報』 2004, 9); 李恒全, 「漢代限田制說」, 『史學月刊』 2007-9); 張金光, 「普遍漢簡中的終結與私有地權的形成—張家山漢簡與簡帛比較研究之一」, 『歷史研究』 2007-5); 張金光, 「秦官社經濟體制模式典型舉例」, 『西安財經學院學報』 2008-5); 臧知非, 「張家山漢簡所見西漢繼承制度初論」, 『文史哲』 2003-6); 趙沛, 「兩漢的宗族土地所有制與宗族的生產組織職能」, 『學習與探索』 2008-6); 朱紅林, 「從張家山漢律看漢初國家授田制度的幾個特點」, 『江漢考古』 92, 2004); 朱紹侯, 「呂後二年賜田宅制度試探—『二年律令』與軍功爵制研究之二」, 『史學月刊』 2002-12); 朱紹侯, 「論漢代的名田爰彥輝制及其破壞」, 『河南大學學報』 2004-1); 朱紅村, 「從張家山漢律看漢初國家漢簡中度的幾個特點」, 『江漢考古』 2004-3); 黃今言, 「漢代小農的數量·特征與地位問題再探討」, 『農業考古』 2007-4); 佐竹靖彦著 『中國古代的田制と邑制』(岩波書店, 2006). 池田雄一, 「呂后《二年律令》をめぐる諸問題」, 『中國古代的律令と社會』, 汲古書院, 2008).

82) 국내에서 제시된 秦 토지국유제설로는 李成珪, 「秦의 土地制度와 齊民支配」,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一潮閣, 1979); 李成珪, 「授田體制的 成立」,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一潮閣, 1984년)이 있다.

83) 박건주, 「상양변법 이후의 名田宅私奴婢 정책」, 『歷史學研究』 33(2008).

84) 任仲燮, 「漢初의 律令 制定과 田宅制度」, 『中國古中世史研究』 25(2011); 任仲燮, 「秦始皇 31年의 自實田」, 『中國古中世史研究』 26(2011); 任仲燮, 「漢初의 田宅 制度와 그 시행」, 『中國古中世史研究』 27(2012).

85) 林炳德, 「秦·漢의 土地所有制」, 『中國史研究』 67(2010); 林炳德, 「出土文獻에 보이는 秦漢 시기 의 土地制度-法的 規定과 그 實際 및 授田制의 變化-」, 『中國史研究』 75(2011).

86) 楊振紅, 『出土簡牘與秦漢社會』(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155면.

87) 『張家山漢墓竹簡』, 175-176면.

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미 漢代의 입으로 수전제를 부정하고 사유제를 말하고 있다. 後漢의 鄭玄이 “漢代에는 授田制가 없다”고 한 것, 董仲舒가 “商鞅 이래로 ‘民得賣買’할 수 있었다”고 한 것은 후대 학자들의 ‘漢代 토지사유제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⁸⁸⁾ 그 결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진시황 31년 ‘使黔首自實田’의 습이 반포되어, 토지점유자가 官府에 스스로 田宅의 수량을 보고하게 한 이후로 自實田은 명실상부한 名田이 되었고, 自實者의 私有土地가 되었다. 이에 名田이라는 용어는 私有土地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견해가 거의 정설화되었다.⁸⁹⁾ 그런데 토지매매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授田制說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二年律令』에 授田制와 토지의 매매·양도·상속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⁹⁰⁾

현재 『二年律令』에 보이는 토지의 매매 규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었다.

① 代戶, 質賣田宅, 鄉部、田嗇夫、吏留弗爲定籍, 盈一日, 罰金各二兩(戶를 계승하거나 전택을 매매하였는데, 鄉部·田嗇夫·吏가 지체하여 簿冊을 작성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면 벌금 각 2량이다).⁹¹⁾

② 寡爲戶後, 予田宅, 比子爲後者爵. 其不當爲戶後, 而欲爲戶以受殺田宅, 許以庶人予田宅. 母子, 其夫; 夫(386)母子, 其夫而代爲戶. 夫同產及子有與同居數者, 令毋質賣田宅及入贅. 其出爲人妻若死, 令以此代戶.(387) 置後律(과부가 戶의 후계자가 되어 田宅을 지급할 경우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 얻은 작에 준한다. 그가 호의 후계자가 되지 않지만 호를 이루고자 줄어든 田宅을 받는다면 庶人으로 田宅을 지급하는 것을 허가한다. 아들이 없다면 그 남편으로 하고 그 남편과도 아들이 없다면 그 남편이 대신하여 호를 계승한다. 남편의 형제 및 아들 가운데 동거하며

88) 『十三經注疏·周禮注疏·地官·載師』(北京: 中華書局, 1979), 726면下, “賈公彥疏引: 漢無授田之法, 富者貴美且多, 貧者賤薄且少.”

89) 高敏, 「從張家山漢簡《二年律令》看西漢前期的土地制度 ——讀『張家山漢墓竹簡』割記之三」(『中國經濟史研究』, 2003-3), 145면.

90) 이상은 任仲燮, 「戰國秦에서 漢初까지의 토지제도 綜觀」, 『中國古中世史研究』 35(2015), 239-241면에 의한다.

91) 『二年律令』, 322簡.

名籍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전택을 팔거나 사위를 들여서는 안 된다. 그가 집에서 나가 남의 처가 되거나 사망하면 순서대로 戶를 계승토록 한다. 置後律).⁹²⁾

①과 ②에는 ‘質賣田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최근 토지 국유제설을 주장하는 飯尾秀幸은 “田이 매매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田을 목적어로 하는 것은 質이고, 賣의 목적어는 宅”이라고 해석하였다.⁹³⁾ 이에 대하여 京都大주석에서는 質는 交易, 交換의 뜻이며, 賣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田宅을 質賣한다”로 해석하여⁹⁴⁾ 質買를 田宅의 목적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토지구유제설의 입장을 취하는 太田幸男은 田宅의 二字를 質買의 목적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여 京都大주석을 지지하고 있다.⁹⁵⁾ 그런데 太田幸男은 專大譯注者가 田은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田은 경작자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近代所有權論이 그 근거에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田과 宅은 동일형식이며 구별되지 않으며 田만이 매매대상으로 하는 사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지적한다. 中國古代(더 나아가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인된 개념은 아니었다. 따라서 매매도 소유권에 기초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점유권, 즉 배타적 사용권이 매매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⁹⁶⁾

3. 『嶽麓秦簡』의 田宅

『二年律令』에서의 “田宅을 質賣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토지구유제설에 입각한 해석에 대하여 『嶽麓秦簡』의 재판관계 문서에서는 漢初만이 아니라 秦에서도 토지가 매매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 토지

92) 위의 책, 386-387簡.

93) 飯尾秀幸, 『中國古代土地所有問題に寄せて 一張家山漢簡 『二年律令』における田宅地規定をめぐって』(『張家山漢簡 『二年律令』の研究』(東京: 東洋文庫, 2014), 37면.

94) 富谷至 編,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研究』, (朋友書店: 京都, 2006)213면, 221면.

95) 太田幸男, 『秦漢出土法律文書にみる「田」・「宅」に関する諸問題』(『張家山漢簡 『二年律令』の研究』(東京: 東洋文庫, 2014), 214면.

96) 太田幸男, 위의 글, 215-216면.

매매의 증거로서 최근 발표된 「奏讞狀」의 案例 4와 7은 아래와 같다.

1) 04 「芮盜賣公列地案」

●敢讞(讞)之：江陵言：公卒芮與大夫材共蓋受棺列，吏後弗鼠(予)。芮買(賣)其分肆土五(伍)朶，地直(值)千，蓋二百六十九錢。以論芮。二月辛未，大(太)守令曰：問：芮買(賣)，與朶別買(價)地，且吏自別直(值)？別直(值)以論狀何如，勿庸報。鞫審，讞(讞)。●視獄：十一月己丑，丞暨劾曰：聞主市曹臣史，隸臣更不當受列，受棺列，買(賣)。問論。●更曰：芮、朶謂更：棺列旁有公空列，可受。欲受，亭佐駕不許芮、朶。更能受，共。更曰：若(諾)。更即自言駕，駕鼠(予)更。更等欲治蓋相移，材爭弗得。聞材後受。它如劾。●材曰：已(已)有棺列，不利。空列，故材列。十餘歲時，王室置市府，奪材以為府，府罷，欲復受，弗得。迺往九月辭(辭)守感，感令亭賀曰：毋爭者鼠(予)材。走馬喜爭，賀即不鼠(予)材。材私與喜謀：喜故有棺列，勿爭，材已(已)治蓋，喜欲，與喜□□賀。喜曰：可。材弗言賀，即擅竊治蓋，以為肆。未歛(就)，芮謂材：與芮共。不共，且辭(辭)爭。材詔【……喜】辭(辭)賀，賀不鼠(予)材、芮，將材、芮、喜言感曰：皆故有棺肆，弗鼠(予)，擅治蓋相爭。感曰：勿鼠(予)。材……材□□□芮□□欲居，材曰：不可。須芮來。朶即弗敢居。它如更。●芮曰：空列地便利，利與材共。喜爭，芮乃智(知)材弗得，弗敢居。迺十一月欲與人共漁，毋(無)錢。朶子土五(伍)方販棺其列下，芮利買(賣)所共蓋公地，卒(?)又(?)蓋□□□與材共□□□芮分方曰：欲即并買(價)地、蓋千四百。方前顧(雇)芮千，已(已)盡用錢買漁具。後念悔，恐發覺有辜(罪)，欲益買(價)令方勿取，即枉(誑)謂方：賤！令二千。二千弗取，環(還)方錢。方曰：貴！弗取。芮毋(無)錢環(還)。居三日，朶責(償)，與期：五日備賞(償)錢；不賞(償)，朶以故買(價)取肆。朶曰：若(諾)。即弗環(還)錢，去往●漁。得。它如材、更。●方曰：朶不存，買芮肆。芮後益買(價)，弗取。責(償)錢，不得，不得居肆。芮母索後環(還)二百錢，未備八百。它及朶言如芮、材。●駕言如更。●賀曰：材、喜、芮妻佞皆已(已)受棺列，不當重受。它及喜言如材、芮●索言如方。●詰

芮：芮後智（知）材不得受列，弗敢居，是公列地毆（也），可（何）故給方曰已（已）受，盜買（賣）于方？已（已）盡用錢，後撓益賈（價），欲令勿取；方弗取，有（又）弗環（還）錢，去往漁，是即盜給人買（賣）公列地，非令。且以盜論芮，芮可（何）以解？芮曰：誠弗受。朶姊孫故為兄妻，有子。兄死，孫尚存。以方、朶終不告芮，芮即給買（賣）方；已（已）用錢，毋（無）以賞（償）。上即以芮為盜買（賣）公地臯（罪）芮，芮毋（無）以避，毋（無）它解。它如前。●獄史豬曰：芮、方并賈（價）。豬以芮不【……。問：……費六百】九錢，買（賣）分四百卅五尺，直（值）千錢。它如辭（辭）。●鞫之：芮不得受列，擅蓋治公地，費六百九錢。□……地積（？）四百卅五尺……千四百，已（已）受千錢，盡用。後環（還）二百。地臧（贓）直千錢。得。獄已（已）斷，令黥芮為城旦，未□□□□□。敢讞（讞）之● 감히 주언합니다. 江陵[현령]이 말하기를 : 公卒 芮와 大夫인 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는 棺列을 받아서 짓고 棺列을 임차받아 세금을 냈는데, 吏가 후에 [노점을 그들에게 세]를 주지 않았습니니다. 芮가 그 肆를 나누어 士伍 朶에게 팔았습니니다. 肆의 地價는 1千錢. 점포값은 269錢이었습니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芮의 죄를 묻고자 합니다. (秦王政22년) 2월 26일 (南郡)太守가 命令하여 말하기를 : 물건대, 芮가 점포를 팔면서 朶와 땅을 구별하여 가격을 정하였느냐? 아니면 점포와 땅을 구별하여 가격산정을 하였느냐? 아니면 관리가 점포와 땅을 구별하여 가격산정을 하였느냐? 스스로 값을 매긴 것이라면 이로써 논한 정황은 어떠한 회보할 필요가 없다. 심리를 명확히 한 후 주언하라. ●원안을 살펴보면 : (秦王政22년) 11월 13일, 縣丞인 暨가 劾하기를 : 主市曹의 臣인 史에게 듣건대, 隸臣 更은 노점자리를 임차받아서는 안 되는데, 棺 노점자리를 임차받고, 그것을 팔았습니니다. 어떻게 논처할 지를 묻습니니다. ●更이 말하기를 : 芮와 朶가 나에게 이르기를 : 棺 노점자리 옆에 관청소유의 빈 노점자리가 있어서 임차받을 수 있다. [우리는] 임차받고 싶었지만, 亭佐인 駕가 우리(芮과 朶)에게 허락해주지 않는다. 네(更)가 받을 수 있으면 함께 하자. 저(更)는 말하기를 : 좋다. 제(更)가 곧 駕에게 신청하였는데, 駕는 저(更)에게 주었습니니다. 저희들(更等)은 건물을 지어 넘겨주고자 하였는데, 材가 와서 다투어서 할 수 없었습니니다. 材가 후에 임차받았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劫과 같습니다. ●材가 말하기를 :저는 이미 棺의 노점자리가 있었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빈 노점자리는 본래 저(材)의 노점자리였습니다. 10여년 전에 국가에서 市府를 설치하면서, 저에게서 [노점]을 빼앗아 官府를 만들었습니다. 관부가 폐기된 후에 다시 임차를 받고자 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해 9월 太守인 感에게 상소하였습니다. 感은 亭長인 賀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쟁탈하는 자기 없으면 材에게 주어라’고 하였습니다. 走馬인 喜가 소송을 일으키자 賀는 즉시 저(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저(材)는 몰래 喜와 모의 하기를 :너(喜)는 본래 棺노점자리가 있으니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내(材)가 이미 짓기 시작하였으니 네(喜)가 갖고자 한다면, 너(喜)와 □□바꾸겠다. 喜가 말하기를 :알겠다. 저(材)는 賀에게 말하지 않고, 곧 제멋대로 몰래 지어서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芮가 저(材)에게 말하기를 :‘[이 점포를] 나(芮)와 함께 하자. 함께 하지 않으면, 장차 소송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材)는 [그를] 속여 【……喜가】 賀에게 소송을 걸자, 賀는 [노점자리를] 우리(材、芮)에게 주지 않아서 저(材)와 芮、喜를 感에게 보고 하기를 :‘[그들] 모두 본래 棺肆를 가지고 있었다. 주지 않아 제멋대로 짓고 소송을 했습니다.’ 感이 말하기를 :‘주지말라.’ 저(材)……材□□□芮□□점유하고 하여, 저(材)는 말하기를 :‘안 됩니다. 芮가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芮는 곧 감히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更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芮가 말하기를 :빈 노점자리의 땅이 편리해서 材와 함께 공유할 것을 탐하였습니다. 喜가 소송을 하자, 저(芮)는 곧 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히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사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芮의 자식 士伍 方이 노점자리 옆에서 棺을 팔고 있어서, 저(芮)는 국가토지(公地)에 함께 [건물]지은 것을 팔기를 탐하여, 끝내 또 세운 □□□□를 材와 함께 □□□하여, 저(芮)는 저의 부분을 方에게 [팔면서]말하기를 :‘[네가] 갖고자 하면 곧 땅과 건물을 합쳐 1,400전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方은 전에 1,000전을 저(芮)에게 지불하였는데, 이미 모든 돈을 써서 漁具를 샀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 죄가 있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웠습

니다. 값을 올려, 方으로 하여금 갖고 싶지 않게 하고자 하여, 곧 거짓으로 方에게 이르기를 : '너무 저렴해!'라고 하며 [그에게] 2,000전을 내게 하였습니다. 2,000전을 받지 못하면, 方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方이 말하기를 : '너무 비싸!'라고 하여 못받았습니다. 芮(芮)는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 [方의 父인] 朶가 빚을 [값을 것을] 독촉하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5일동안 빚을 완전히 갚겠다. 갚지 않으면 당신(朶)은 원래 가격대로 점포를 가져라' 朶가 말하기를 :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곧 돈을 갚지 못하고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材와 更과 같습니다. ●方이 말하기를 : '부(朶)가 없을 때 芮의 점포를 샀습니다. 예(芮)가 後에 가격을 올려서 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값을 것을 독촉했지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점포를 점유할 수 없었습니다. 芮의 母인 索이 후에 200錢을 돌려주었고 800전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駕가 말한 것이 更의 진술과 같습니다. ●賀가 말하기를 : '材、喜와 芮의 妻인 佞은 모두 이미 관의 노점자리를 임차받았으니 재차 임차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른 것은 喜가 말한 바가 材와 芮의 진술과 같습니다. ●索이 말한 것은 方의 진술과 같습니다. ●芮를 힐문하기를 : '너(芮)는 후에 材가 노점자리를 임차받을 수 없고 점유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 노점자리토지이다. 왜 이전에 方을 속여 이미 임차받았다고 말하고, 方에게 속여서 팔았는가? 이미 돈을 모두 쓰고서 후에 [매매가 성립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값을 올려 그로 하여금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方은 취하지 못하였는데, [너는] 또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 이는 곧 사람을 속여서 국가토지를 훔쳐 판 것이니 불법이다. 장차 盜罪로 너(芮)를 논할 것이니, 너(芮)는 어찌 해명할 것인가?' 芮가 말하기를 : '진실로 임차받지 않았습니다. 朶의 누나 孫은 원래 나의 형수로 자식이 있습니다. 方과 朶가 끝내 저(芮)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저는 곧 方에게 속여 팔았습니다. 이미 돈을 모두 써서 값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부가 제가(芮) 국가토지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면, 저(芮)의 죄를 정하십시오. 저(芮)는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해명할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에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獄史인 豬가 말하기를 : ‘芮와 方은 가격을 합병하였으니, 나(豬)는 芮가 【……조사결과 : ……609전을 쓰고】 를 하지 않았습니다. 435[평방]척의 토지를 팔았으니 [부정한 돈]값이 1,000전이다. 다른 것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습니다. ●심리결과 : ‘芮는 노점자리를 임차받을 수 없는 데도 제멋대로 국가토지에 건물을 짓는데 609전을 사용했는데, □……토지면적 435[평방]척……[약속한 가격] 1,400전에서 이미 1,000錢을 받았으나 모두 써버렸습니다. 후에 200전을 돌려주었습니다. 토지 장물가는 1,000전이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본안은 이미 斷獄되어 이미 芮를 黜為城旦에 처하였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주언합니다.)⁹⁷⁾

② 07 「識劫媿案」

【敢讞(讞)】之：十八年八月丙戌，大女子媿自告曰：七月為子小走馬第(義)占家訾(貲)。第(義)當□大夫建、公卒昌、士五(伍)積、喜、遺錢六萬八千三百，有券。媿匿不占吏為訾(貲)。媿有市布肆一、舍客室一、公士識劫媿曰：以肆室鼠(予)識。不鼠(予)識，識且告媿匿訾(貲)。媿恐，即以肆、室鼠(予)識；為建等折棄券，弗責。先自告，告識劫媿。媿曰：與第(義)同居，故大夫沛妾。沛御媿，媿產第(義)、女媿、沛妻危以十歲時死，沛不取(娶)妻。居可二歲，沛免媿為庶人，妻媿。媿有(又)產男必、女若。居二歲，沛告宗人、里人大夫快、臣，走馬拳，上造嘉、頡曰：沛有子媿所四人，不取(娶)妻矣。欲令媿入宗，出里單賦，與里人通飲(飲)食。快等曰：可。媿即入宗，里人不幸死者出單賦，如它人妻。居六歲，沛死，第(義)代為戶、爵後，有肆、宅。識故為沛隸，同居。沛以三歲時為識取(娶)妻；居一歲為識買室，賈(價)五千錢，分馬一匹、稻田廿畝，異識。識從軍，沛死。來歸，謂媿曰：沛未死時言以肆、舍客室鼠(予)識，識欲得。媿謂沛死時不令鼠(予)識，識弗當得。識曰：媿匿訾(貲)，不鼠(予)識，識且告媿。媿以匿訾(貲)故，即鼠(予)肆、室。沛未死，弗欲以肆、舍客室

97) 朱漢民·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參)』(上海辭書出版社, 2011), 257-260면.

鼠(予)識。不告媿, 不智(知)戶籍不為妻、為免妾故。它如前。●識曰: 自小為沛隸。沛令上造狗求上造羽子女齡為識妻。齡令狗告羽曰: 且以布肆、舍客室鼠(予)識。羽乃許沛。沛已(已)為識取(娶)齡, 即為識買室, 分識馬、田, 異識, 而不以肆、舍客室鼠(予)識; 識亦(?)弗(?)求(?)。識已(已?)受它。軍歸, 沛已(已)死, 識以沛未死言謂媿: 媿不以肆、室鼠(予)識, 識且告媿匿訾(貲)。媿乃鼠(予)識, 識即弗告。識以沛言求肆、室, 非劫媿。不智(知)媿曰劫之故。它如媿。●建、昌、喜、遺曰: 故為沛舍人【沛】織(貨)建等錢, 以市販, 共分贏。市折, 建負七百, 昌三萬三千, 積六千六百, 喜二萬二千, 遺六千, 券責(債)建等, 建等未賞(償), 識欲告媿, 媿即折券, 不責建。它如媿。●媵、快、臣、拳、嘉、頡言如媿。●狗、羽、齡言如識。●弟(義)、若小不訊。必死。●卿(鄉)唐、佐更曰: 沛免媿為庶人, 即書戶籍曰: 免妾。沛後妻媿, 不告唐、更。今籍為免妾, 不智(知)它。●詰識: 沛未死, 雖告狗、羽, 且以肆、舍客室鼠(予)識, 而後不鼠(予)識, 識弗求。(已)已為識更買室, 分識田、馬, 異識、沛死時有(又)不令, 弟(義)已(已)代為戶後, 有肆、宅。識弗當得, 何故尚求肆、室, 曰: 不鼠(予)識? 識且告媿匿訾(貲)? 媿即以其故鼠(予)識, 是劫媿。而云非劫, 何解? 識曰: □欲得肆、室, 媿不鼠(予)識。識誠恐謂且告媿, 媿乃鼠(予)識。識實弗當得。上以識為劫媿, 辜(罪)識, 識毋(無)以避, 毋(無)它解, 辜(罪)。它如前。●問: 匿訾(貲)稅及室、肆, 臧(贓)直(值)各過六百六十錢, 它如辟(辭)。●鞫之: 媿為大夫沛妾。沛御媿, 媿產弟(義)、媵。沛妻危死, 沛免媿為庶人, 以為妻, 有(又)產必、若。籍為免妾。沛死, 弟(義)代為戶後, 有肆、宅。媿匿訾(貲)稅直(值)過六百六十錢, 先自告, 告識劫。識為沛隸。沛為取(娶)妻, 欲以肆、舍客室鼠(予)識, 後弗鼠(予), 為買室, 分馬一匹、田廿畝, 異識。沛死, 識後求肆、室。媿弗鼠(予), 識恐謂媿: 且告媿匿訾(貲)。媿以故鼠(予)肆、室, 肆、室直過六百六十錢。得。皆審。疑媿為大夫妻、為庶人及識辜(罪)。毆(繫)。它縣論。敢獻(讞)之。●吏議: 媿為大夫□妻; 貲識二甲。或曰: 媿為庶人; 完識為城旦, 渠(頰)足輸蜀(감히 주언합니다.(진왕 정)18년 8월 병술일(21일)에 성인여자媿이 스스로 자수하면서 고소하였다. “7월에 아들인 小走馬 義를 위해 家訐를 신고했습니다. 義는 대부 건, 공졸 창, 사오

積·喜·遺에 대해 68,300錢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券도 있지만 媿은 이를 숨겨두고 吏에게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媿은 市에 布肆 하나, 솜의 객실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公士 識이 媿을 협박하며 말하기를: ‘상점과 건물을 나(識)에게 달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媿)이 재산을 숨긴 것을 고발할 것이다.’ (이에) 媿은 두려워서 곧 識에게 상점과 건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建을 비롯한 채무자들을 위해 券을 부러뜨리고 채무를 갚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자수하고 동시에 識이 媿을 협박하였다고 고소합니다.” 媿의 진술 “義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大夫 沛의 妾이었습니다. 沛는 媿과 동침하여 義와 딸 媵을 낳았습니다. 沛의 妻 危는 10년 전에 죽었고, 沛는 다시 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沛는 媿을 면하여 庶人으로 삼은 후에 처로 삼았습니다. 저는 아들 必과 딸 若을 낳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沛는 宗人이자 里人인 大夫 快와 臣, 走馬 拳, 上造 嘉와 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沛는 媿에게서 4명의 자식을 두었으며 다시 아내를 두지 않았다. 媿을 宗人에 입적시키고 里의 單賦를 내어 里人과 더불어 음식을 먹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快 등이 말하기를: ‘可합니다’라고 했습니다. 媿은 즉시 宗人에 입적되었고 里人이 불행히 죽었을 때 單賦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처와 같게 되었습니다. 6년 후 沛가 죽었습니다. 義가 (沛를) 대신해 戶人과 爵後가 되어 상점과 집을 소유했습니다. 識은 본래 沛의 隸로 沛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沛는 동거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識을 위해 妻를 맞이해 주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識을 위해 집을 매입하였는데 가격은 5천 錢이었습니다. (또한) 말 1필과 稻田 20畝를 나누어 주어 識을 분가시켰습니다. 識이 종군하였을 때 沛가 죽었습니다. (識이) 돌아와서 媿에게 말하기를, ‘沛가 죽기 전에 肆와 솜의 객실을 識에게 준다고 했으니 識이 이를 가지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媿이 말하기를: ‘沛가 죽을 때 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으니 識은 당연히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識이 말하기를: ‘媿은 재산을 숨기고 識에게 주지 않았으니 識 또한 媿을 고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媿은 재산을 은닉한 까닭에 즉시 肆와 宿舍을 주었습니다. 沛는 죽기 전에 肆와 宿舍을 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沛가) 媿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 妻로 되어 있지 않고 免妾으로 되어 있는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다. ●識의 진술 : “저는 어릴 적부터 沛의 隸였습니다. 沛가 上造 狗에게 上造 羽의 딸인 齡을 識의 처로 주도록 요청하게 했습니다. 이 때 沛가 狗로 하여금 羽에게 고하기를 : ‘장차 布肆와 舍客室은 識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고 羽는 이에 沛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沛는 이미 識을 위해 齡을 아내로 맞도록 하고 識을 위해 집을 사서 주고 말과 밭도 나누어주며 분가하도록 했지만 肆와 舍客室은 識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識도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다른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軍에서 돌아오니 沛는 사망했으므로 識은 沛가 죽기 전에 말한 것을 媿에게 일러 말하기를 ‘媿이 肆와 室을 識에게 주지 않으면 識은 장차 媿이 재산을 숨긴 것을 고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媿이 이에 識에게 주자, 識은 媿을 곧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識은 沛가 한 말로써 肆와 室을 구한 것이지 媿을 겁박한 것은 아닙니다. 媿이 왜 제가 겁박했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媿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다. ●建·昌·積·喜·遺의 진술 : “원래 沛의 舍人 이었습니다. 沛가 建 등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함께 수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장사가 손해가 나자 建은 700전, 昌은 33,000전, 積은 6,600전, 喜는 22,000전, 遺는 6,000전을 각각 빚지게 되었습니다. 券書에는 建 등의 채무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建 등이 아직 이를 상환하기 전에 識이 媿을 고발하려고 하니 媿은 곧바로 券을 부러뜨리고 建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媿의 진술과 같습니다.” 婁·快·臣·拳·嘉·頡의 진술은 媿과 같다. ●狗·羽·齡의 진술은 識과 같다. ●義·若은 어려서 신문하지 않았다. 必은 사망하였다. 鄉嗇夫 唐과 佐人 更이 말하였다. “沛는 媿을 면하여 庶人으로 삼은 뒤 바로 戶籍에 ‘免妾’이라고 기록했습니다. 沛는 나중에 媿을 妻로 삼았지만 唐과 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호적에 ‘免妾’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識에 대한 詰問 : 識의 진술, “肆와 室을 얻고자 했으나 媿이 주지 않았으므로 識은 진실로 媿을 두렵게 하기 위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媿이 이에 주었습니다. 識은 사실

이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관리(나으리 上)께서 識이 媿를 겁박해서 識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識은 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해명할 것은 없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다른 것은 앞에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問 : 은닉한 재산세 및 집과 점포의 장물 가치는 각각 660전이 넘는다. 다른 것은 진술한 내용과 같다. ●鞫 : 위의 심리 내용 총괄 정리, 이상의 사실은 모두 분명합니다(皆審).

媿를 대부의 처인지, 庶人인지와 識의 죄가 의문입니다. 모두 구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縣에서 논죄했습니다. 감히 奏讞합니다.)⁹⁸⁾

①과 ②의 내용은 매우 장문이다. ①의 내용을 요약하면, 公卒 芮가 大夫 材와 함께 棺肆(棺을 파는 상점)에 있는 국가의 빈 땅인 公有地에 함부로 건물을 지었는데, 官吏가 임차를 허용해주지 않았다. 芮의 처 佞이 이미 官의 상 자리를 임차 받은 상태기 때문에 二重의 임차 특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芮는 그 건물의 肆 일부를 형수(孫)의 동생인 土伍 朶 및 그의 아들인 方에게 국가로부터 임차 받았다고 속이고 팔았다. 이는 국가 토지를 方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사기 행이다. 肆의 면적은 435평 방 尺이며, 地價는 1천이었고, 蓋價(건물 가격)는 269이었다. 芮는 方으로부터 약정 매매 가격인 1,400전 가운데 1,000전을 받았는데 모두 사용해버렸다. 芮는 公有地를 사기로 매각한 것이 두려워서 方에게 200전을 돌려주었으나 800전은 아직 돌려주지 못한 상태다. 국가 공유지의 장물가는 1,000전이다. 芮는 국가의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盜罪로써 처벌되었고, 장물 가액이 660을 초과하므로 黥爲城旦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되었다는 내용이다.⁹⁹⁾ 안례 ①은 案例 4는 秦王政 22년의 것으로서 秦始皇 31년 自實田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이고 안례 ②는 사안은 識이라는 인물 이 大女子 女冤을 협박한 사안인데, 秦王政 18년(B.C.229) 8월 丙戌일(21일) 에 발생한 것으로서 案例 4보다 4년 빠른 시기의 것이다. 즉 안례 ①과 안례 ②는 모두 秦始皇 31년 自實田의 조치를

98) 朱漢民·陳松長 主編, 위의 책, 263-266면.

99) 임중혁, 앞의 글, 272면.

취하기 이전의 사례에 해당하며 모두 토지의 사유·매매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토지 매매의 증거로서 최근 발표된 『奏讞狀』의 案例 4와 7을 제외하고도 『嶽麓書院藏秦簡(肆)』의 『田律』에는 개인의 사유토지가 縣官에 몰수되는 사례가 나온다.¹⁰⁰⁾ 『奏讞狀』의 案例 4와 案例 7과 『嶽麓書院藏秦簡(肆)』의 『田律』의 결과는 그동안 秦漢土地國有說의 근거로 제시된 사례의 주장과 크게 모순된다. 秦漢土地國有·私有制說 100년 논쟁사에 있어서 주목을 받았던 어떤 사료보다도 『嶽麓書院藏秦簡(參)』의 『奏讞狀』의 案例 4와 案例 7과 『嶽麓書院藏秦簡(肆)』의 『田律』은 가장 획기적 사료가 될 것 같다.

V. 맺음말

이상으로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壹)』, 上海辭書出版社, 2010;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貳)』, 上海辭書出版社, 2011;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參)』, 上海辭書出版社, 2011; 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肆)』, 上海辭書出版社, 2015의 출판을 계기로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 된 ‘律令’, ‘罰金刑과 贖刑’, ‘土地制度’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秦의 사상의 통일과 독점으로 유명한 사건이 ‘焚書坑儒’이다. 진시황이 승상 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가와 점복, 의학, 농학 등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하고 모두 거두어 불태우도록 한 ‘焚書’는 잘 알려진 사건이다. 사실 과연 이 분서가 얼마나 철저히 실시되었을까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戰國時代 楚簡의 발견과 秦의 律令文書의 연속적인 출토는 이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최근에 활발하게 공개되고 있는 秦簡은 민간의 사학 금지 및 국가의 사상 독점이 실재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¹⁰¹⁾ 秦墓 출토 간독에는 주로 律令, 占卜書, 算數書, 醫書 등이 포함되어 있고, 戰國이래 諸子 문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100) 朱漢民·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肆)』(上海辭書出版社, 2015), 105면.

101) 최근 대량으로 출토된 秦簡은 陳偉가 중심이 되어 『秦簡牘合集』(武漢大學出版社, 2014)으로 종합 정리되어 출간되었다. 『秦簡牘合集』에는 『睡虎地11號秦墓竹簡』·『睡虎地4號秦墓木牘』·『龍崗秦墓簡牘』·『郝家坪秦墓木牘』·『周家臺秦墓木牘』·『嶽山秦墓木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하여 戰國時代 출토 竹簡이나 漢墓 간독에서는 학술 서적 다량 출토되고 있다. 『嶽麓書院秦簡』은 1970년대 후반의 『睡虎地秦簡』·『龍崗秦墓簡簡』 이후 새로이 출토된 秦의 율령문서로 ‘狹書’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전국시대~진·한시기의 죽간문서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일한 문헌이라 해도 傳世文獻보다 出土文獻이 훨씬 그 원초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고대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동일한 문헌이라 해도 한나라 학자들의 손을 거쳐 정리된 『史記』나 『漢書』와 같은 傳來文獻史料가 아닌 이를테면, 司馬遷이 『史記』를 저술하였을 때 보았던 간독자료, 원초적 사료인 출토문헌에 환호한다. 예컨대, 『史記』는 비록 그 당시의 사료를 바탕으로 엄밀히 저술된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司馬遷의 손을 거쳐 가공되었고, 또한 불가피하게 수많은 간독사료 가운데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거쳤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고대사연구자들은 한나라학자들의 손을 거쳐 다시 정리된 전래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래문헌과 동일한 문헌도 아닌, 아니 전래문헌을 통해서도 추측하기도 어려웠던 출토법제문서인 『睡虎地秦簡』을 필두로, 戰國 秦, 秦統一前後, 漢初의 律令文書가 연이어 공개된 것은 그야말로 이 분야 연구자에게 전무후무한 사태의 전개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전과 고문자에 밝은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간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소규모연구회에 대해 소액지원이 있었는데, 최근 이마저도 사라진 상태이다. 연구 여건이 악화되면서 간독을 연구하던 소규모연구회는 더욱 쪼개져서 일부 전임교수와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겨우 연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의 중국과 일본과의 연구 수준의 격차는 더욱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 된 듯하다.

■ 참고문헌

〈사료〉

- 劉信芳·梁柱, 『雲夢龍崗秦簡』, 科學出版社, 2001.
- 四川省博物館·青川縣文化館, 『釋青川秦墓木牘』, 『文物』, 1982-1.
- 『睡虎地秦簡』, 陳偉主編, 『秦簡牘合集』, 武漢大學出版社, 2014.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_____,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 北京: 文物出版社, 2001.
- _____,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壹)』,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0.
- _____, 『嶽麓書院秦簡(貳)』,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 朱漢民·陳松長主編, 『嶽麓書院秦簡(參)』,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 _____, 『嶽麓書院秦簡(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 中國文物研究所·湖北省文物研究所, 『龍崗秦簡』, 中華書局, 2001.
-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張家山二四七號漢墓出土法律文獻釋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里耶秦簡(壹)』, 北京: 文物出版社, 2012.
- [唐]李林甫 等 撰, 陳仲夫點校, 『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1992.
- 『東觀漢記』([東漢] 劉珍 等 撰, 吳樹平 校注, 《東觀漢記校注》(上、下冊),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7.
- 『周禮注疏』,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79.
- 『晉書』,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85.

〈논문〉

- 金慶浩, 「秦·漢初 行書律의 內容과 地方統治」, 『史叢』 73, 高麗大 史學科, 2011.
- 林炳德, 「秦·漢의 土地所有制」, 『中國史研究』 67, 中國史學會, 2010.
- _____, 「出土文獻에 보이는 秦漢 시기의 土地制度-法的 規定과 그 實際 및 授田制의 變化-」, 『中國史研究』 75, 中國史學會, 2011.
- _____, 「秦에서 漢으로의 罰金刑과 贖刑의 變化와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134, 東洋史學會, 2016.
- 박건주, 「상앙변법이후의 名田宅私奴婢 정책」, 『歷史學研究』 33, 全南大史學會, 2008.
- 李成珪, 「秦漢 帝國의 計時 行政」, 『歷史學報』 222, 歷史學會, 2014.
- _____, 「秦의 土地制度와 齊民支配」,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 _____, 「授田體制의 成立」,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 一潮閣, 1984.
- 吳峻錫, 「漢代문서전달 노선과 郵傳기구의 설치」, 『中國史研究』 88, 中國史學會, 2014.
- _____, 「秦代 地方統治와 文書傳達體系」, 『中國史研究』 95, 中國史學會, 2015.
- 任仲燦, 「秦漢律의 罰金刑」, 『中國古中世史研究』 15, 中國古中世史學會, 2006.

- _____, 「漢初의 律令 制定과 田宅制度」, 『中國古中世史研究』 25, 中國古中世史學會, 2011.
- _____, 「秦始皇 31年の 自實田」, 『中國古中世史研究』 26, 中國古中世史學會, 2011.
- _____, 「漢初의 田宅 制度와 그 시행」, 『中國古中世史研究』 27, 中國古中世史學會, 2012.
- _____, 「秦漢 율령사 연구의 제문제」, 『中國古中世史研究』 37, 中國古中世史學會, 2015.
- 賈麗英, 「漢代“名田宅制”與“田宅逾制”論說」, 『史學月刊』 2007-1, 河南大學; 河南省歷史學會, 2007.
- 高大倫, 「〈張家山漢簡田律〉與〈青川秦木牘為田律〉比較研究」(載張顯成主編『簡帛語言文字研究』第一輯, 四川古籍出版社: 巴蜀書社, 2002.
- 高 敏, 「從張家山漢簡『二年律令』看西漢前期的土地制度—讀張家山漢墓竹簡割記之三」, 『中國經濟史研究』 2003-3, 北京: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2003.
- _____, 「從雲夢秦簡看秦的土地制度」, 『雲夢秦簡初探』, 河南省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1.
- 南玉泉, 「秦令的演化及其在法律形式中的地位」, 『考古與文物』 2005-2, 陝西省文物局: 陝西省考古研究所.
- 魯家亮, 「讀麓書院秦簡行書律令筭記」 簡帛網 2009-11-24.
- 馬 新, 「論漢代土地占有形態及其矛盾運動」, 『東岳論叢』 25-2, 山東省濟南市: 山東社會科學院, 2004.
- 徐富昌, 『睡虎地秦簡研究』, 北京: 文史哲出版社, 1993.
- 石 洋, 「戰國秦漢間“貲”的字義演變與其意義」, 『華東政法大學學報』 89, 華東政法大, 2014.
- 宋國華, 「對張家山漢簡『20一條文的理解—與曹旅寧先生商榷』, “簡帛研究網站”, 2003-09-24.
- 宋文紅, 「秦農業法律制度探微」, 『安徽農業科學』 34-4, 安徽農業科學編輯部, 2006.
- 楊 寬, 「釋青川秦牘的田畝制度」, 『文物』, 1982-7, 北京: 文物出版社, 1982.
- 楊振紅, 『出土簡牘與秦漢社會』,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 _____, 「『二年律令』的性質與漢代法系」, 『出土簡牘與秦漢社會』,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 _____, 「出土法律文書與秦漢法律二級分類構造」, 『出土簡牘與秦漢社會』,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 _____, 「秦漢“名田宅制”說—從張家山漢簡看戰國秦漢的土地制度」, 『中國史研究』 2003-3,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2003.
- 閔桂梅, 「近五十年來秦漢土地制度研究綜述」, 『中國史研究動態』 2007-7.
- 王彥輝, 「論張家山漢簡中的軍功名田宅制度」, 『東北師大學報』 2004-4, 長春: 東北師範大學, 2004.
- _____, 「論漢代的分戶析產」, 『中國史研究』 2006-4,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2006.
- _____, 「《二年律令·戶律》與高祖五年詔書的關係」,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1-1, 湖南省長沙市: 湖南大學, 2007.
- _____, 「對《二年律令》有關土地·賦·繼承制度中幾則釋文的思考」,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04, 長春: 東北師範大學, 2008.
- _____, 「試論《二年律令》中爵位繼承制度的幾個問題」, 『江蘇行政學院學報』 2009-2.
- 王戰闊, 「再論秦簡中貲甲盾等級問題」 簡帛網, 2013-01-16.
- 于振波, 「張家山漢簡所反映的漢代名田制」, “簡帛研究網站”, 2003-09-24.
- _____, 「簡牘所見秦名田制蠡測」, “簡帛研究網站”, 2004-01-11.
- _____, 「張家山漢簡中的名田制及其在漢代的實施情況」, 『中國史研究』 2004-1, 北京: 中國社會科學

- 院歷史研究所, 2004.
- _____, 「略論漢名田制與唐均田制之異同」, “簡帛研究網站”, 2004-10-27.
- _____, 「淺談出土律令名目與『九章律』的關係」, 『湖南大學學報』24-4, 湖南省長沙市: 湖南大學, 2010.
- _____,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集刊』2010-5, 吉林省長春市: 吉林大學, 2010.
- 于豪亮, 「青川縣出土秦更修田律木牘—四川青川縣戰國墓發掘簡報(J)」, 『文物』, 1982-1.
- 李力, 『張家山247號墓漢簡法律文獻研究及其述評』,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009.
- 李昭和, 「青川出土木牘文字簡考」, 『文物』1982-1, 北京: 文物出版社, 1982.
- 李俊強, 『魏晉令制研究』, 吉林大學博士論文, 2014.
- 李翠麗, 「西漢授田制與漢初商品經濟的發展—“弛山澤之禁”新釋—」, 『江南社會學院學報』2004-9, 江蘇省蘇州市: 江南社會學院, 2004.
- 李恒全, 「漢代限田制說」, 『史學月刊』2007-9, 河南大學: 河南省歷史學會, 2007.
- 張建國, 「秦令與睡虎地秦墓竹簡相關問題略析」, 『帝制时代的中國法』, 北京: 法律出版社, 1999.
- 張金光, 「普遍漢簡中的終結與私有地權的形成—張家山漢簡與簡帛比較研究之一」, 『歷史研究』2007-5,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2007.
- _____, 「秦官社經濟體制模式典型舉例」, 『西安財經學院學報』2008-5, 陝西省西安市: 西安財經學院, 2008.
- 臧知非, 「張家山漢簡所見西漢繼承制度初論」, 『文史哲』2003-6, 山東省濟南市: 文史哲編輯部, 2003.
- 張忠焯, 『秦漢律令法系研究初編』,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12.
- 曹旅寧, 「『嶽麓書院秦簡(肆)』「亡律」公布的歷史意義」, 簡帛網, 2015-02-07.
- _____, 「《嶽麓秦簡》(肆)概述與《法經》辨偽」, 簡帛網, 2016-03-23.
- 趙沛, 「兩漢的宗族土地所有制與宗族的生產組織職能」, 『學習與探索』2008-6, 黑龍江省哈爾濱市: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08.
- 陳松長, 「岳麓書院藏秦簡中的行書律初論」, 『中國史研究』2009-3, 北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2009.
- _____, 「岳麓秦簡中的兩條秦二世時期令文」, 『文物』2015-9.
- 陳偉, 「岳麓書院秦簡行書律令校讀」, 簡帛網, 2009-11-24.
- _____, 「岳麓書院秦簡行書律令校讀」, 簡帛網, 2009-11-24.
- _____, 「尉卒律校讀(一)」, 簡帛網, 2016-03-21.
- _____, 「尉卒律校讀(二)」, 簡帛網, 2016-03-21.
- _____, 「里耶秦簡に見える秦代行政と算術」, 『大阪産業大學論集』(人文・社會科學編) 19, 2013.
- 陳松長, 「岳麓書院所藏秦簡綜述」, 『文物』2009-3, 北京: 文物出版社, 2009.
- 朱紅林, 「從張家山漢律看漢初國家授田制度的幾個特點」, 『江漢考古』92,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江漢考古編輯部, 2004.
- 朱紹侯, 「呂後二年賜田宅制度試探—『二年律令』與軍功爵制研究之二」, 『史學月刊』2002-12, 河南大學: 河南省歷史學會.
- _____, 「論漢代的名田爰彥輝制及其破壞」, 『河南大學學報』2004-1, 河南大學, 2004.

- 周海鋒,「岳麓書院藏秦簡(肆)的內容和價值」,『文物』712,北京:文物出版社,2015.
- _____,「岳麓秦簡「尉卒律」研究」,『出土文獻研究』第14集,中西書局,2015.
- 朱紅村,「從張家山漢律看漢初國家漢簡中度的幾個特點」,『江漢考古』2004-3,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江漢考古編輯部,2004.
- 黃今言,「漢代小農的數量・特征與地位問題再探討」,『農業考古』2007-4.
- 黃盛萇,「青川新出秦田律木牘及其相關問題」,『文物』1982-9,北京:文物出版社,1982.
- 邢義田,「尉卒律臆解」簡帛網,2016-03-23.
- 廣瀨薰雄,『秦漢律令研究』,東京:汲古書院,2010.
- 堀敏一,「晉秦始律令の成立」,『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私の中國史學(二)』,東京:汲古書院,1994.
- 宮宅潔,「漢令の起源とその編纂」,『中國史研究』5,東京:中國史學會,1995.
- 大庭脩,『秦漢法制史の研究』,東京:創文社,1982.
- 藤田高夫,「秦漢罰金考」,『前近代中國の刑罰』,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1996.
- 飯尾秀幸,「中國古代土地所有問題に寄せて——張家山漢簡『二年律令』における田宅地規定をめぐって」,『張家山漢簡『二年律令』の研究』,東京:東洋文庫,2014.
- 富谷至,「晉秦始律令への道——第一部 秦漢の律と令」,『東方學報』72,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2000.
- _____,『秦漢刑罰制度の研究』,東京:同朋舎,1988.
- 富谷至 編,『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研究』,京都:朋友書店,2006.
- 水間大輔,「秦律・漢律の刑罰制度」,『秦漢法制研究』,東京:知泉書館,2007.
- 若江賢三,「秦律における贖刑制度(上)」,『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18,愛媛大學法文學部,1985.
- _____,「秦律における贖刑制度(下)」,『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19,愛媛大學法文學部,1986.
- 佐竹靖彦,『中国古代の田制と邑制』,東京:岩波書店,2006.
- 中田薰,「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比較法雜誌』1-4,1951.
- _____,「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補考」,『法制史研究』3,1952.
- _____,「支那における律令法系の發達について」,『比較法雜誌』1-4,1951.
- 田村誠,「岳麓書院『數』譯注稿(2)」,『大阪産業大學論集』(人文・社會科學編)17,2013年2月.
- 池田雄一,「呂后《二年律令》をめぐる諸問題」(『中国古代の律令と社會』,東京:汲古書院,2008.
- 池田夏樹,「戰國秦漢期における贖刑の方法と制度の運用」,『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28,中央大學東洋史研究室,2004.
- 太田幸男,「秦漢出土法律文書にみる「田」・「宅」に関する諸問題」,『張家山漢簡『二年律令』の研究』,東京:東洋文庫,2014.

<中文摘要>

『嶽麓秦簡』和中國古代法制史的諸問題

林炳德*

战国时期的律大约出现于公元前260年，秦令存在与否则一直颇有争议，岳麓书院藏秦简被发现后才证实其确实存在过。“盗铸钱令”与“钱律”并存，“金布律”与“金布令”并存，对于这种同名的律名和令名混用的原因，一般认为有两个。首先认为律和令的区分不明确，导致对同一所指既可称为律也可称为令。其次，认为令是对律的补充，比如说金布令改称金布律，使两个名称并存。对于称谓混用的原因，本文认为是在部分令改为律的过程中发生的。初始令是强制执行力以较低的上級命令，是不是在国家法律形式。汉令是国家的法律形式，皇帝和大臣讨论共同制定了一个不可见的一个规律。秦令存在任何更多的争议，秦令與汉令不相同。有在发展过程中一定是秦令质变并有展开过程来汉令。这令通过什么程序做了高级指挥专慢慢去改变国家立法启动或有在秦令汉令将是未来的挑战在发展过程中没有质的变化。

依据最近公开的「里耶秦简(壹)」和「岳麓书院藏秦简(貳)」依存推论出现的秦代的赏1甲·赏1盾等的货币换算额，作为新的根据发表新的研究成果。

如果检讨「二年律令」「具律」看到的汉律的赎钱额和「岳麓书院藏秦简(貳)」里面确认的以赎耐，赎死的 赎钱额为基准的新秦汉的罚金刑和赎刑的话，汉的赎死是2斤8两，即如果按40两是秦的金1两576钱计算的话，那么和秦的12马甲统一。如果秦的金1两576钱用于汉的赎刑计算的话和秦的赎刑并没有太大的差异。所以笔者认为汉的罚金刑和赎刑是从秦的赏1盾和赏2盾的平

* 韩国 忠北大学 歷史系教授

均价格里开始并和秦的赎死12马甲对照着,它中间的罚金刑和赎刑是秦的罚金刑和赎刑的近似值相近的金額‘两’来配列的.

汉代的罚金刑并不是汉初以「二年律令」的罚金一两·罚金二两·罚金四两建立的体系里脱离出来的,并且根据在文献史料里出现的罚金四两和罚金一两·罚金二两的事例也是继承了「二年律令」的罚金一两·罚金二两·罚金四两的体系为依据思考,那么我认为罚金一斤和罚金二斤不是罚金刑的赎刑体系里必须有它的位置.

通过对《岳麓秦简·奏讞状》的分析,我们认为战国时期秦国允许土地的买卖与传承。秦国的土地制度虽然实行的是国有制,却也承认土地的私有权。土地授田之前属于国家,授田之后归个人所有,因此就带上了私有土地的性质。

[Key Words] The Bamboo Slips of the Qin Dynasty Collected in Yuelu Academy, Law of Qin-Han China, Law, Decree, Fine Penalty, Ransom, State ownership of land, Private ownership of land